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백서 2026

ECCK 백서 2026 회장 인사말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회장

한국과 유럽은 오랜 시간 동안 무역과 투자, 혁신과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긴밀한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이러한 관계의 중심에서 유럽 기업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한국 사회와 공유하고, 양측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더욱 깊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 한-EU 정상회담은 양측의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상회담을 계기로 출범한 한-EU 고위급 경제대화(High-Level Economic Dialogue, HLED)를 ECCK는 적극 환영합니다. HLED가 정부와 기업 간의 정책적 이해와 조율을 강화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국과 유럽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CCK 역시 회원사들의 실질적인 경험과 정책적 관점을 바탕으로 HLED의 향후 논의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백서에 담긴 정책 제언 외에도 ECCK는 올해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경제안보, 통관 등 회원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현안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이어온 건설적인 정책 대화와 열린 소통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2026을 여러분께 선보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백서에는 18개 위원회 및 포럼이 마련한 82개의 정책 제언이 담겨 있으며, 이를 수입 및 통관, 국제표준 및 적합성, 공정경쟁, 규제적용, 기타 규제 장벽의 다섯 가지 공통 정책 분야로 구분하였습니다. 산업별 현안은 서로 다르지만, 보다 예측 가능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본 백서의 정책 제언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규제 투명성을 높이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앞으로도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동반자로 함께할 것이며, ECCK 역시 기업과 정책당국을 연결하는 신뢰받는 가교로서 공동의 비전이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백서 발간에 함께해 주신 각 위원회와 회원사, 정부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백서의 제언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정책 대화와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위한 소중한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

ECCK 백서 2026 총장 인사말



스테판 언스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총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는 현장의 경험과 건설적인 정책 대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본 백서에 수록된 모든 제언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들의 전문성과, 한국의 경제 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지원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백서에는 18개 위원회 및 포럼이 마련한 82개의 정책 건의사항을 다섯 개의 공통 정책 분야로 체계화하여 담았습니다.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는 제언들이지만, 모두 규제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 공정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강화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안된 정책들은 규제 협력이 유럽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 기준과의 적합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해외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며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것은 기업의 효율성과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 의약품과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투명한 평가 체계는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국의 투자 및 임상개발 환경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산업 경쟁력과 혁신을 촉진할 뿐 아니라, 한국과 유럽연합 간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 규제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백서를 통해 이루어진 여러 성과는 정부와 산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증빙부조만실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규제기관, 그리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온 모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열린 자세와 협력은 ECCK 백서를 실질적인 정책 대화의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규제 개선은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추진해야 할 지속적인 과제입니다. 올해의 정책 제언들이 한국의 투자환경과 국제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백서 발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위원장과 부위원장, 회원사, 정부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CCK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테판 언스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총장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백서 2026

목차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2026> 인사말 - 필립 반 후프 회장	p. 2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2026> 인사말 - 스테판 언스트 총장	p. 3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소개	p. 6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사용 안내서	p. 14
2025 리뷰	p. 15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위원회 (포럼) 보고서	p. 23
항공 및 방위	p. 24
주류	p. 28
자동차	p. 33
화학	p. 48
화장품	p. 58
디지털	p. 61
에너지 및 환경	p. 63
가족친화미래	p. 71
패션 및 유통	p. 75
식품	p. 82
헬스케어	p. 85
인사 및 준법	p. 94
보험	p. 96
지식재산권	p. 100
주방 및 소형가전	p. 112
물류 및 운송	p. 115
해양산업	p. 118
조세	p. 122
부록	p. 128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소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소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2012년에 설립된 경제 단체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약 350 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11만 명의 임직원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17개의 산업별 위원회와 8개의 포럼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 정부 협의 및 회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대부분 유럽계 기업이지만, 국적에 관계없이 ECCK의 비전에 공감하는 모든 기업은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CCK는 회원사들의 위임을 받아 구성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각국 상공회의소 및 주한 유럽 대사관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사무국은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 회원 서비스, 대외 협력 및 행사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연간 160회 이상의 위원회 회의와 100회 이상의 정부 협의를 통해 회원사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간하는 ECCK White Paper는 한국 정부와 유럽 기업 간의 정책 대화를 대표하는 핵심 발간물로, 한국의 규제 환경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ECCK Connect, Newsletter 등 다양한 발간물을 통해 회원사와 정부, 산업계 간 정보공유와 소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CCK는 정책 제언 활동을 통해 한국의 규제 경쟁력과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 국제 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과 유럽 간 경제 협력과 상호 이해 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영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전 세계 유럽 경제 단체 네트워크인 유럽기업협의체 글로벌 네트워크(European Business Organisation Worldwide Network, EBOWN)의 회원으로서 국제 정책 교류와 경제 협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CSR 파트너와 협력하여 회원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확산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CCK는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신뢰받는 가교로서 양측의 경제 협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회원사와 정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개요	설립	2012
	회원사	350+
	회원사 임직원	110,000+
	위원회 참여 회원사	160+
	(산업별) 위원회	18
	(주제별) 포럼	8
	정부 협의	140+
	연간 행사	80+

주요 활동

위원회 및 포럼

위원회와 포럼은 ECCK의 정책 제언 활동의 핵심입니다. 위원회와 포럼을 통해 회원사들은 산업별 규제 동향과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통상 및 비즈니스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의 정책 제언을 마련합니다. 위원회는 산업별 규제 이슈를 중심으로 정부와의 정책 대화를 추진하며, 포럼은 인사관리, 지속가능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공통 관심 주제를 논의합니다.

행사 및 네트워킹

ECCK에서는 정책 간담회, 세미나, 콘퍼런스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여 회원사 간 교류를 촉진하고 회원사와 정부 및 주요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촉진합니다. 특히 정책 간담회와 정부 협의 등을 통해 유럽 산업계의 의견을 한국 정부와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화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ECCK는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 관계자와 정부 인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교류를 지원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판물

ECCK는 다양한 출판물을 통해 회원사와 정부, 산업계 간 정보 공유와 정책 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기 간행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ECCK 백서(ECCK White Paper)
- ECCK 회원명부(ECCK Membership Directory)
- 디지털 매거진(ECCK Connect Magazine)
- 주간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이사진



필립 반 후프(벨기에)
회장
 AXA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외이사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회장은 2023년 3월부터 AXA 코리아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선임고문(Senior Advisor)도 맡고 있습니다. 그는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ING은행 한국대표로 재직했습니다. ING은행 한국대표로 부임하기 전에는 싱가포르에 위치한ING은행 아시아태평양 금융기관영업부 대표를 맡았으며, 2017년부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영진(Management Team)으로 활동했습니다. 반 후프 회장은 30년 이상 은행 산업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싱가포르, 한국, 일본에서 18년간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은행과의 전략적 관계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및 국부펀드와 관련된 다양한 전략적 사안에 대해 경영진 및 이사회 수준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립 반 후프 회장은 벨기에 국적으로, 2021년 ECCK 활동을 시작하여 2022년 ECCK 지속가능성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23년 6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유럽상공회의소(EuroCham Singapore)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을 2018년까지 역임했으며, 2019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싱가포르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퍼 스테니우스(핀란드)
부회장
 레달
 대표

퍼 스테니우스(Per Stenius) 부회장은 2010년부터 레달의 회장 겸 CEO이자 레달 코리아의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2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략 및 프로세스 개발 전문가로, 다양한 산업에서 활약해 왔습니다.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 & Company), 액센추어(Accenture), 스트라토스 벤처스(Stratos Ventures) 및 여러 기술 기업에서 주요 경영진 및 컨설턴트로 근무하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타바버라에서 전기공학 박사 및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헬싱키 공과대학교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국내외 주요 경영 및 학술지에 3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과정에서 전략분야 객원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레달 코리아는 2020년에 ECCK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문고영(캐나다)
부회장
RWE Renewables Korea
대표

문고영 부회장은 2020년 11월부터 독일 해상풍력 개발업체인 RWE Renewables Korea의 공동대표이자 Country Chair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해상풍력, 태양광,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소 연료 전지, 폐기물 에너지화, 수처리 멤브레인 산업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에너지 기술 및 사업 개발 분야에서 28년 이상 산업 경험을 쌓았습니다. LG, LS, POSCO, 공주대학교, 한양과 같은 한국 기업에서 기술 개발 리더, 교수, 사업 개발 리더로 일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워털루 대학교에서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SCI 저널에 23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다양한 컨퍼런스, 포럼 및 기관에서 강연자와 이사회 멤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기술 주제에 대해 60회 이상 초청 강연을 했습니다. RWE Renewables Korea는 2021년에 ECCK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문고영 부회장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ECCK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가영(한국)
이사
크노엘코리아
대표

이가영 이사는 한국 국적으로, 2016년 1월 크노엘코리아 설립 이래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국 요크 대학교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경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크노엘에 합류하기 전 10년 이상 주로 지속가능성 및 기후 변화 분야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크노엘에서 화학 규제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나 마리아 보이(루마니아)
이사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대표이사

루마니아 출신의 안나마리아 보이(Dr. Ana-Maria Boie) 이사는 현재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대표이사 및 인체의약품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약 업계에서 25년 이상 경험을 보유한 보이 대표는 글로벌 및 리전에서 경영, 마케팅, 영업, ESG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십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카롤 다빌라 의과대학에서 의학 학위를 취득한 후, 티핀 대학교에서 Executive

MBA 과정을 수료하는 등 의료 및 비즈니스 분야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2009년 베링거인겔하임에 합류한 이후에는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러시아,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근무하며 핵심 사업을 이끌었으며, 회사의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인 Sustainable Development for Generations (SD4G) 전략 수립에도 기여했습니다. 2024년에는 ECCK 헬스케어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한국 내 보건 의료 산업 발전 및 업계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브로웰(영국)
감사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로버트 브로웰(Robert Browell) 감사(Treasurer)는 영국 국적으로, PwC 한국 회원사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 서비스 기관인 삼일PwC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유럽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고객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는 PwC 영국에서 경력을 시작해 첫 10년을 보낸 후, 2012년 PwC 한국에 합류했습니다. 현재 ECCK 조세 위원회 위원장과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 특별 고문(Special Advisor)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한 반드롬(벨기에)
이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선임고문

요한 반드롬(Johan Vandromme) 이사(Trustee)는 벨기에 국적으로, 2020년 10월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선임고문(Senior Advisor)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도 같은 직책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2001년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경쟁총국(Directorate-General for Competition) 사건 담당관(Case Handler)으로 경력을 시작하였으며, 2007년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2009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베이징 대표부로 합류하여 무역 및 경쟁 정책을 담당하였으며, 2013년에는 서울 대표부로 이동하여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다시 베이징 대표부에서 경쟁 및 법무(Competition & Justice) 정책을 담당한 후, 2020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복귀했습니다.

사무국



스테판 언스트
총장

스테판 언스트(Stefan Ernst) 총장은 2023년 10월 1일부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CK) 총장(President)으로 취임했습니다. 또한 2026년 6월부터는 전 세계 유럽상공회의소 및 경제 단체를 대표하는 유럽기업협체 글로벌 네트워크(European Business Organisation Worldwide Network, EBOWN) 이사회 의장(Chair of the Board)을 맡아 전 세계 유럽 경제 단체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고 국제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총장은 바이어스도르프(Beiersdorf AG)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중남미, 중국, 대만, 한국 등 다양한 해외 시장에서 마케팅 및 경영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바이어스도르프 코리아/대만 법인을 총괄한 후, 독일 본사에서 글로벌 약국사업(Global Pharmacy Operations) 총괄 부사장(Corporate Vice President)으로 재직하다 2015년 회사를 떠났습니다.

2016년 한국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현재 Accenture Song의 일원인 Mackevision Korea의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ECCCK 합류 전에는 국내에 기반을 둔 국제 건축설계사무소 ZABEL + PARTNERS Architects에서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역임했습니다.

독일 국적의 스테판 총장은 독일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에 모두 능통하며, 30년 이상의 마케팅 및 최고경영진(Executive)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온 글로벌 경영인입니다.

영국 미들섹스 대학교(Middlesex University)에서 유럽경영학(European Business Administration)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5년 독일 European School of Business에서 디플롬 경영학(Diplom-Betriebswirt) 학위를 받았습니다.

김보선
부총장

박안숙
상무, 위원회 총괄, 화장품 / 헬스케어 위원회

서효경
이사, 주류 / 식품 / 주방 및 소형가전 위원회

총괄

사무국

노금채
이사, 회계

위원회 관리

유래근
이사, 자동차 위원회

김시윤
매니저, 보험 위원회 / 조세 / CFO 포럼

강선영
매니저, 패션 및 유통 / 지식재산권 위원회

신혜원
매니저, 항공 및 방위 /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 / 지속가능성 포럼

김경현
매니저, 화학 / 디지털 / 물류 및 운송 위원회

운영 및 대외협력

조혜은
팀장, 멤버십 및 대외협력

장유리
팀장,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심혜원
팀장, 미래개발 포럼 / 마케팅 및 이벤트

이정현
매니저, 가족친화미래 / 관광 포럼 / 정책 이벤트

조보경
매니저, 인사 및 준법 포럼 / 인사

부산 챕터

안드류 밀라드
부산 지부장

김예지
매니저, 해양산업 위원회

본 백서는 2026년 ECCK 회원사들이 제기한 82개의 산업 및 규제 관련 이슈와 정책 건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즈니스 및 규제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ECCK 산하 18개 산업별 위원회 및 포럼을 통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모든 건의사항은 관련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제언과 함께 제시되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 및 규제 환경
위원회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산업·
규제 환경 및 주요 목표를 개괄적으로
소개합니다.

3

총 주요이슈

화장품

화장품 위원회

한국 정부는 바이오에센스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규제 완화 가능성은 국내 기업 도약에 보다 적극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우한유한양행글로벌 화장품 위원회는 이 공약적 변화의 흐름에 적극 동참하며, 한국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을 위한 국제적 제도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글로벌에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 안전과 시장 운영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보다 보다 긴밀의 부합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축소하고 제도의 국제적 적합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이러한 협력적 규제 개선 노력은 한국이 글로벌 뷰티 바이오에센스 허브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한-EU FTA를 기반으로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함으로써, 동일 기업에는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우수하고 안전한 글로벌 제품이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이슈요약
화장품
수입통관예정보고 (EIO) 절차 개선에 대한 검토

이는 수입화장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2028년부터 제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화장품 책임관리담당자가 부담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가 정전적으로 시행됨과 더불어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EIO에서는 화장품 정보들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CPNP)에 입력하는 형식인 데 반해 한국에서는 한국약품수출입협회(KPF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이에 우한유한양행글로벌 화장품 위원회는 통관규제에 의해 수입 전 한국외국 품수출입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입 화장품의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 개선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입통관부 통합규제
신입통관부 무역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신규

2. 기능성화장품
차이산정(차이수입) 표시 개선

이슈요약
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차이산정(차이수입)에 SPF 적용결과에 근거하여 함량(소수점 이하 4자리)로 표시하되, SPF 50 이하의 경우 SPF 50으로 표시하고, SPF 50 이상은 「SPF50+」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SPF 50에 근접한 경우에도 SPF 60을 상향하여 소계하는 높은 SPF의 경우에도 실제 SPF 50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정확한 SPF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실제 SPF 50-59.9인 경우 SPF 50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입 제품과 같이 국내에서 표시한 SPF 수치가 다르게 표시 기재되어 소비자에게 SPF 함유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일체는 추가 위험성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유럽에서는 SPF 측정결과가 50-59.9인 경우 SPF 50으로 표시하고, 60 이상인 경우 「SPF 50+」로 표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European Commission Recommendation 2006/647/EC)

건의사항
이에 우한유한양행글로벌 화장품 위원회는 차이산 정한 실제 SPF 50-59.9인 경우 SPF 50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차이산 정한 자수 표시법 개선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1.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2호
2. 기능성화장품 심사제 관련 규정 제13조 제2항 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화장품심사과
신규

3. 화장품 해와 제조관
주조지 표시 기재 개선

이슈요약
한정 「화장품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한글로 명확히 기재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사명 및 그 소재지를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의 구분하기 추가로 한글로 기재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의 안내 목적에 불충족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국제적으로

이슈요약
해당 규제의 현황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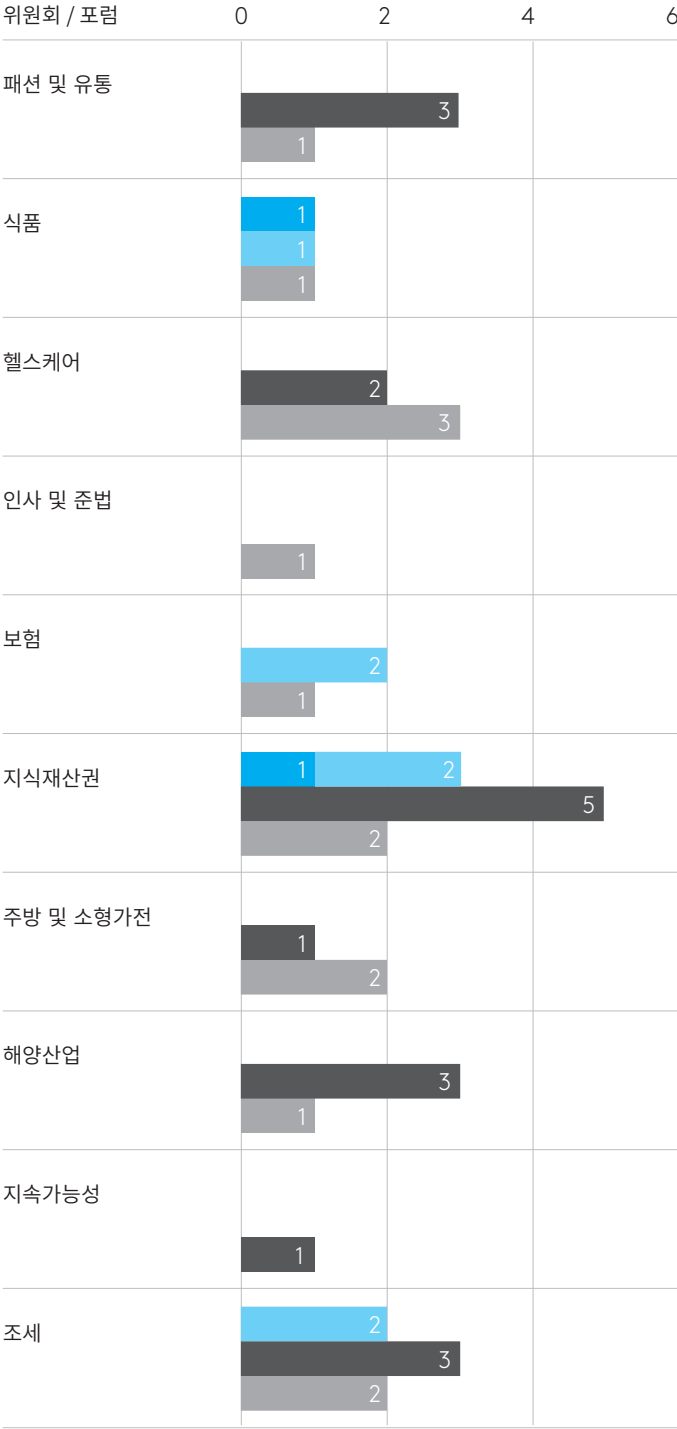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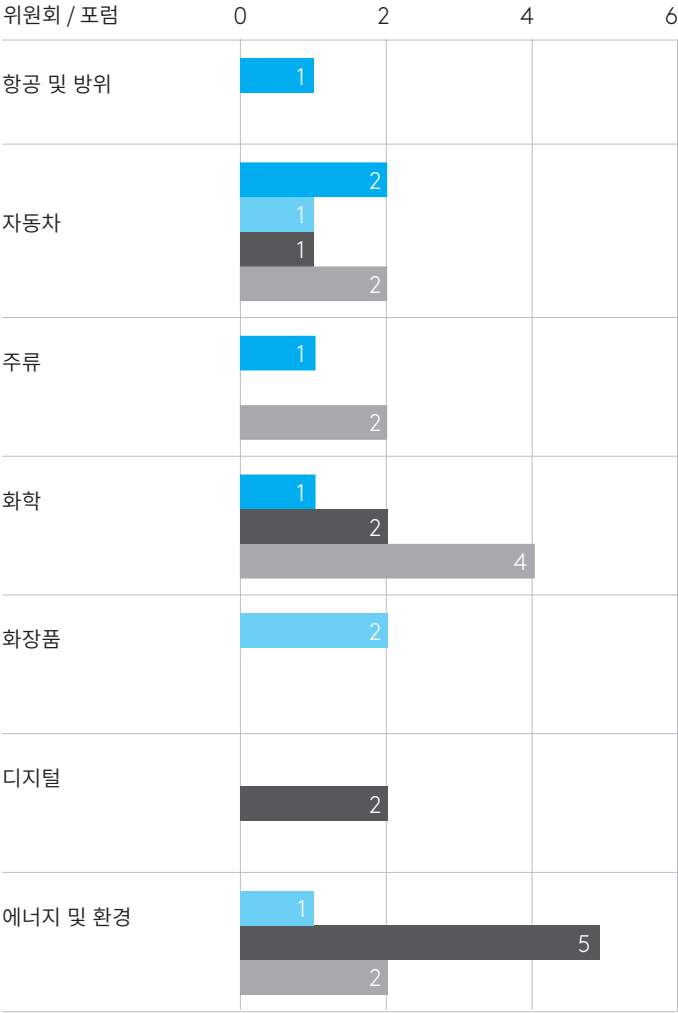
건의사항
규제 개선을 위한 업계의 정책 제언

관련규정/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와 함께 해당
건의사항이 전년도 백서에서 이어진
재건의(Retained), 일부 내용이 수정
된 개정(Updated), 또는 올해 처음
제안된 신규(New) 건의사항인지를 표
시합니다.

2025 리뷰

14 — 백서 사용 안내서

2025년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17개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이슈와 한국 정부에 제시하는 70개의 건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각 규제 이슈와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부처의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산업별로 요약·정리되어 있습니다.



2025 리뷰

2025년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17개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이슈와 한국 정부에 제시하는 70개의 건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각 규제 이슈와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부처의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산업별로 요약·정리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각 산업별 규제 이슈 및 건의사항과 이에 대한 관련 정부 부처의 회신 내용 및 ECCK의 조치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 평가

수용

부분 수용

미수용

장기 검토

ECCK 조치계획

안전 종료(완료)

안전 종료(중단)

진행 상황 점검

재건의

위원회/ 포럼	이슈	정부부처 평가	ECCK 조치계획
항공 및 방위	1 철충교역 제안서 평가 시 소통 방식 개선	수용	장기 검토
자동차	1 사고기록장치 장착 고지 의무 관련 처벌 규정 완화	장기 검토	진행 상황 점검
	2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에서의 처벌 규정 완화	수용	진행 상황 점검
	3 친환경 중대형 상용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장기 검토	장기 검토
	4 신기술에 대한 특례 인정 절차 마련	수용	진행 상황 점검
	5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 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 요건 완화	부분 수용	수용
	6 전기차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제도 추진	미수용	미수용
주류	1 주류 소매 면허자에 주류 전자상거래 및 배송 기회 확대	장기 검토	장기 검토
	2 주류 용기 음주 관련 경고 문구 규정에 대한 의견	수용	수용
	3 발효 주류(과실주) 종량세 확대 검토	장기 검토	장기 검토

위원회/ 포럼	이슈	정부부처 평가	ECCK 조치계획
화학	1 화평법과 상이한 산업법의 화학물질 목록으로 인한 업계 부담 완화 개선	장기 검토	장기 검토
	2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면제사항 중복 규제 해소	장기 검토	장기 검토
	3 동일 물질에 대한 OR 및 수입자 병행 등록 허용	수용	수용
	4 국내 제조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시 화학물질 확인 서류 허용	장기 검토	장기 검토
	5 영업비밀 물질의 비공개 승인 개선	장기 검토	장기 검토
	6 선임 신고증 사본 전달 간소화 요청	미수용	수용
	7 살생물제품 중 향료 성분의 유·위해성 자료 제출 범위 완화 요청	미수용	장기 검토
화장품	1 화장품 표시 기재 중 해외 제조원 표시 개선	부분 수용	장기 검토
	2 EU에서 확대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된 화장품의 수입 절차 개선	부분 수용	수용
디지털	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 기준 개선안	미수용	진행 상황 점검
	2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한 법안 제안	미수용	진행 상황 점검
에너지 및 환경	1 계통 연계정보 공유 방안 제안	미수용	미수용
	2 육상풍력 계측기 유효 지역의 유효기간 지정	미수용	장기 검토
	3 유연접속 제도 적용 조건 구체화 필요	부분 수용	진행 상황 점검
	4 민간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육상 송변전설비 건설 시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 적용	미수용	진행 상황 점검
	5 민간 해상풍력 공동 접속 설비의 전원개발촉진법 대상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절차 수립	미수용	진행 상황 점검

위원회/포럼	이슈	정부부처 평가	ECCK 조치계획
	6 부유식 변전소 규격 제정 검토		
	7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 기준 개정		
	8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단계에서의 주민 수용성 심사 기준 구체화		
패션 및 유통	1 생활용품 정보 표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QR코드 활용 항목 확대 및 제도 구체화		
	2 신발류 제품의 중요 정보 표기방법		
	3 수입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위한 소매용 포장 원산지 표시 개선		
	4 가족제품 표시 기준의 유연성 제고 및 개선		
식품	1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소통 방법 개선 요청		
	2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검사 결과 통지 개선		
	3 천연 향료 허용 범위 확대		
헬스케어	1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속 등재 제도 도입 및 허가 환경 개선		
	2 혁신 신약의 가치 저하에 대한 환경 개선		
	3 위험 분담제 합리화를 위한 환급제 등 부가가치세 과부담 해소 및 재평가 등 사후관리 개선		
	4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감염병 병원체 분자진단 현장검사 활용 확대		
	5 체외 진단 시험연구용(RUO) 제품 수입 시 과도한 화학물질 정보 요구에 대한 규제 완화		
인사 및 준법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의 추상적 확장에 대한 제한 필요		

위원회/포럼	이슈	정부부처 평가	ECCK 조치계획
보험	1 자동차보험 피해자 본인 인증(QR) 법제화		
	2 망분리 환경에서 해외 보안 솔루션 도입 제한 완화		
	3 규제 당국의 대체보험에 대한 가이드선 제공 필요		
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2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국경 조치 강화		
	3 국제우편물(EMS) 수입통관 효율성 제고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위조품 유통 방지 제도 마련		
	5 위조품 유통 근절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위조품 유통 대응 강화를 위한 경찰 내 지역 전담 조직 및 수사 체계 개선		
	7 국제 입법례에 부합하는 상표법상 법정배상금 제도 개선		
	8 온라인 위조품 사이트 차단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9 유사 디자인(lookalike, 통칭 'dupe') 제품 확산에 따른 법적 대응 기준 마련 및 실무 적용 구체화		
	10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주방 및 소형가전	1 시장조사용 견본품 적합성 평가 면제 수량 확대		
	2 기구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 개선		
	3 유해 물질 함유 기준 준수 선언 등록 기한 변경 요청		
해양산업	1 한-EU FTA EUR 6,000 수출 인증 기준으로 인한 비효율 및 무역 왜곡 가능성—기준 현대화 제안		

위원회/포럼	이슈	정부부처 평가	ECCK 조치계획
	2 해상풍력촉진법(OSW Promotion Act)하의 규제 명확화 및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	⊗
	3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BBCHP) 요건 완화, 안전 인증기관(RO) 제한 해소 및 국가재정 지원 제도의 공정경쟁 촉진	⊗	🔄
	4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BBCHP)과 관련된 외국 선급 협회에 대한 불공정한 비즈니스 기회	⊗	⊗
지속가능성	1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 효과 측정 및 개선을 위한 주요 성과지표(KPI) 구축	⊗	⊗
조세	1 국세청(NTS)을 상대로 한 상호합의절차 (MAP) 신청의 실무상 어려움 및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과세통지 및 납부 유예 구제 신청의 어려움	⬇️	📈
	2 소프트웨어 지급 대가의 사용료 과세	🕒	⊗
	3 사전 승인(APA)와 세무조사의 관계	⬇️	📈
	4 이전가격 보고서 적시 보관·비치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특례	⊗	🔄
	5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신청인 적격 확장	⊗	⊗
	6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요건	⊗	🔄
	7 임시 수입된 까르네 물품의 용도 외 사용 승인 시 적정 과세가격	🕒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위원회 (포럼) 보고서

항공 및 방위

한국의 항공·방위산업은 방산 수출 확대, 산업협력 강화, 동맹국 시장 내 첨단 역량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공급망 회복탄력성, 기술 주권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방위산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유럽 간 협력 확대는 한국의 제조 및 체계통합 역량과 유럽의 첨단기술, 검증된 공급망, 전 주기 지원 역량, 동맹국 방산 프로그램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한국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위체계, 임무장비, 항공전자, 엔진,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MRO (유지보수·수리·정비), 전 주기 지원, 무인차량 및 드론 분야, 신형 기술 분야는 상호 호혜적인 협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CCK 항공 및 방위위원회는 한국의 방위사업 및 산업협력 제도가 기술 파트너십, 공급망 회복탄력성, 장기적인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위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관련 정책 및 제도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동시에 첨단기술의 전략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회의 건의사항은 보다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한-유럽 방위산업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산업 및 기술협력을 위한 명확한 협력 경로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검증된 공급업체, 장기적인 협력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는 한국의 항공·방위산업 생태계가 더욱 회복탄력적이고 경쟁력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의 건설적인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

총 주요이슈

1.	이슈요약
절충교역 지침 개선안의 실효적 이행 및 첨단기술 기반 절충교역 과제 평가체계 강화	한국의 절충교역 제도는 해외 방산기업이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 기술 기반 및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수단입니다. 2025년 12월, ECCK 항공&방위위원회는 절충교역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유연성 제고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2월 11일, ECCK와 방위사업청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은 유럽계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개

선 방향을 설명하고 관련 의견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의 건설적인 답변과 유럽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개선안은 이행기간 연장 시 페널티 부과율 조정, 합의에 따른 절충교역 이행내용 변경 시 페널티 완화, 절충교역 프로젝트 이행기간 별도 설정 및 이행보증 방식 변경, 가치축적 제도 개선, 절충교역 가치평가의 투명성 등 주요 운영상 쟁점의 완화 및 간소화 방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선안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완화 및 간소화 조치가 절충교역 지침과 관련 운영 절차에 반영되고, 구체적인 이행 일정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절충교역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경우 해외 방산기업들의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이행 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되며, 절충교역의 원활한 이행으로 한국 방위산업 생태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첨단기술 기반 절충교역 과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산업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이 필요합니다. AI, 사이버보안, 자율체계, 양자기술, 소프트웨어 등 신형 기술 분야의 과제는 기존의 제조 중심 평가 기준이나 단기 거래 가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절충교역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성숙도, 전략적 중요성, 지식재산권 처리, 장기적 산업 참여 가능성, 한국 방위역량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항공 및 방위 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이 2026년 2월 11일 간담회에서 제시한 절충교역 개선안을 절충교역 지침 개정 또는 보완 지침을 통해 공식화하고, 첨단기술 기반 절충교역 과제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 절충교역 개선안에 대한 명확한 이행 일정 제시
- 이행기간 연장 시 페널티 부과율 조정 및 합의에 따른 이행내용 변경 시 페널티 완화 기준 명확화
- 절충교역 프로젝트에 대한 별도 이행기간 기준 명시
- 은행보증 외 대체 방식 등을 포함한 이행보증 방식의 기준 명확화
- 가치축적 제도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적용 기준 명확화
- 절충교역 가치평가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 AI, 사이버보안, 자율체계, 양자기술, 소프트웨어 등 신형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 분야별 가치평가 기준 및 전문가 검토 절차 마련

관련규정	1. 방위사업법 제20조 (절충교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절충교역의 기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지침
건의사항 조치현황	방위사업청 방위산업협력과 개정

이슈요약

한국 방산기업은 주요 플랫폼 수출, 지상무기체계, 유도무기, 항공우주 사업 및 관련 산업협력을 통해 유럽 내 입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량 공백 해소, 억제력 강화 및 공급망 회복탄력성 제고를 추진하는 유럽 국가들에 한국이 중요한 방산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한국의 국내 방위조달 체계에서는 유럽 항공·방산기업이 일부 틈새 기술 분야를 제외하고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하위체계, 임무장비, 항공전자, 엔진,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MRO, 전 주기 지원 및 첨단 기술 분야 참여는 여전히 제약이 있으며, 이는 유럽 기업들이 NATO 체계 등을 포함한 동맹국 방산 프로그램에서 검증된 역량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시장 접근은 한국군과 국내 방위산업이 유럽의 첨단기술, 검증된 공급업체, ITAR-free 체계, 전 주기 및 글로벌 지원 역량, 장기적 산업협력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운용성, 기술 신뢰성, 공급망 회복탄력성이 점차 중요해지는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 협력은 향후 소요 역량에 대한 조기 가시성, 공급업체 자격심사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명확한 보안 및 지식재산권 요건, 그리고 국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경로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부족할 경우 협력은 개별 조달사업 또는 절충교역 의무 이행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으며, 지속 가능한 한-유럽 방위산업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유럽 기업이 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한국은 획득사업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의 역량, 안정적인 산업 기반, 그리고 장기적인 기술협력과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항공 및 방위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유럽 항공·방산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시장 접근 및 산업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위원회는 방위사업청 및 관계 기관이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향후 소요 역량 및 주요 획득사업 계획에 대한 정보 조기 공유
- 주요 조달 및 사업 정의 단계 이전에 산업계 설명회, 정보요청서(RFI) 또는 기술교류 절차 운영
- 하위체계, 임무장비, 항공전자, 엔진,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MRO 및 전 주기 지원 분야에서 유럽 기업의 참여 경로 명확화
- 공급업체 자격심사 절차, 보안 요건, 현지화 기대 수준 및 지식재산권 처리 기준의 조기 명확화
- 신뢰할 수 있는 유럽 파트너와의 공동 연구개발, 기술실증, 시범협력 과제 및 국내 산업 파트너십 촉진

- 한국의 안보, 주권 및 기술 신뢰성 요건을 유지하면서도 검증된 해외 공급업체의 참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조달 및 협력 관행 검토

관련규정	1. 방위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방위조달에 적용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방위산업협력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주류

3

총 주요이슈

한국의 주류 산업은 지난 세월 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류 선택에 있어 다양성과 품질을 중시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수준 높은 니즈와 요구에 발맞추어 이루어졌습니다. 맥주와 탁주의 종량제 전환 같은 세제 개편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전반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여전히 시대착오적이고 파편화되어 있으며 보호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과세 체계,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전자상거래 규제, 그리고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의무화 제도는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들은 혁신을 막고, 수입 주류, 그리고 중소 규모의 기업에 불균형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종량제 체계 도입, 주류 소매면허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배송 전면 자유화, 그리고 RFID 규제 완화가 시급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주류 산업을 현대화하고 공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고용을 확대하고 정부와 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명확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1.

주류 소매면허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배송 허용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편익 극대화

이슈요약

한국 정부는 2017년부터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에 한해서만 온라인 판매 및 배송을 허용해 왔습니다. 국내 전통주 산업을 우대하는 이 차별적인 제도는 결과적으로 수입 와인, 증류주, 그리고 국내 비전통주류를 디지털 경제에서 배제하는 구조적 차별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규제 수혜를 입은 전통주는 국세청 통계 출고량 기준 2017년 98만 케이스¹에서 2024년 260만 케이스 규모로 대폭 성장하였으며, 이는 전체 수입 위스키의 출고량을 상회합니다.

이러한 격차는 한국에서 주류가 전자상거래 배송 대상에서 제외된 유일한 주요 소비재(FMCG)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주에만 전자상거래가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기에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WTO 및 FTA의 비차별 원칙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소비자 편익을 외면한 채 대다수 주류의 배송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규제는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통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류 해외 직구 금액은 2020년 62.6억 원에서 2024년 435.3억 원으로 지난 4년간 약 700% 급증했습니다.

1. 1 case = 9 Liter

한국의 고도화된 선진형 성인 인증 시스템을 바탕으로 모든 주류 소매면허자에게 전자상거래 배송을 확대 적용한다면, 한국 주류 산업의 현대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세수 증대: 투명성이 높은 디지털 채널을 통해 거래 내역을 확실하게 포착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주세 수입을 동시에 확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표시 사항과 각종 세금(VAT, 관세, 주세 등)을 우회하여 국내 가정으로 직접 배송되는 기회주의적인 해외 웹사이트들의 편법 거래를 견제하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 연관 산업 활성화: 물류, 창고 관리,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리테일 테크(retail-tech) 혁신 분야에서 국내의 직접투자를 활발히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권익 및 편익 제고: 편리함과 제품 다양성, 프리미엄 품질을 추구하는 현대 한국 소비자들의 안목과 니즈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일상적으로 어려운 1인 가구와 이동 소외계층 등 약 8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 K-주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한류지원): K-푸드와 K-콘텐츠, K-탤런트가 차별화된 매력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것처럼, 국내 프리미엄 주류 생산자들 역시 견고한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발판 삼아 필수적인 역량과 유통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진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류 위원회는 정부가 보호주의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구조적으로 일관되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춘 주류의 전자상거래 배송 규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특정 단일 품목에만 전자상거래를 허용하고 다른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차별적·보호주의적 규정을 철폐하기 위해 해당 규제는 모든 주류에 대해 전면적으로 허용되거나 혹은 전면적으로 차단되어야 합니다.

한국 경제와 주류 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갈 명확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때, 본 위원회는 모든 주류 소매면허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배송의 자유화를 건의합니다. 공정성과 디지털 안전에 관한 글로벌 기준에 맞춰 한국의 주류 유통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인위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시장 차별 요소를 철폐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관련	주세법,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관련부처	국세청 소비세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2. 산업 성장 및 소비자 편익 도모를 위한 단일 종량세 체계 도입의 필요성

이슈요약
2020년 한국 정부는 맥주와 탁주에 대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미래지향적인 세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향후 제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주류에도 종량세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업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종량세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른 주종의 종량세 세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기준판매비율(과세표준 할인율) 도입이나 증류주 기반의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세율 인하 등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류 과세 제도는 전체 주류 산업의 방향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참고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과세 체계가 필요합니다. 일부 주종에 대해서만 종량세 전환을 선택한 우리와는 달리 일본은 주류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모든 주종을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일본의 종량세 체계 전환은 특히 프리미엄 제품군이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고품질·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과세 환경이 조성되면서 일본 위스키와 사케 산업이 눈에 띄게 발전할 수 있었고, 이는 곧 강력한 수출 동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현재 맥주, 발포주, 제3맥주로 나뉘어 있던 세율을 단일 세율로 통합하는 추가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 조세 당국은 이러한 개정이 세제를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세금으로 인한 가격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품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만을 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한국의 주류 과세 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발효주 내에서도 서로 다른 두 가지 세제가 혼재되어 운영 중이며, 증류주에 대한 종량세 개편 논의는 여전히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종량세를 적용하는 일부 주종 외 나머지 주종에 대해 종가세 체계를 고수하는 것은 고물가 시기에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종가세 구조는 고품질의 프리미엄 제품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모순을 낳아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한국의 가격이 타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소비자들이 품질에 기반한 선택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직구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주류 산업의 무역 경쟁력은 약화되고 국가 세수 확보의 기회마저 상실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류 위원회는 공정하고 경쟁력 있으며 소비자 친화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량세 체계를 나머지 모든 주류 카테고리로 전면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종합적인 종량세로의 전환은 OECD, WHO, 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여러 국제기구가 인정하고 권장하는 글로벌 모범 사례입니다.

이러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은 조세 회피나 불법 거래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수 흐름을 확보해 줄 것입니다. 또한 프리미엄 제품에 가해지던 세제상의 불이익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구축하고, 나아가 소비자와 국내 산업 모두에 직접적인 혜택을 돌려줄 것입니다.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전환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정부 기관과 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담 실무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관련	주세법
관련부처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3. 위스키 제품 RFID 태그 부착 의무 완화 검토

이슈요약
대한민국의 주류 제품 표시 규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엄격한 수준이며, 일부 규제의 경우 국내에만 존재하는 독자적인 제도로 평가됩니다. 특히 위스키 제품에 대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스키 RFID 제도는 무자료 거래 및 가짜 양주 등 주류 불법 거래 근절을 목적으로 2010년 도입되었고, 2012년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2000년대 당시에는 유흥업소 등 유흥 채널을 중심으로 불법 주류 거래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었던 만큼, 제도 도입은 당시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15년 이상 경과한 현재, 해당 규제가 여전히 산업과 소비자에게 주는 부담을 상회하는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스키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고 소비·유통 환경도 변화한 만큼 ‘균형 있는 규제’라는 원칙에 따라 해당 제도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FID 태그 부착 의무가 전면 폐지될 경우 위스키 제조·수입업체와 소비자는 연간 약 350억 원² 수준의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절감된 비용은 소비자 경험 개선,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을 위해 재투자될 수 있습니다.

관세·과세 당국의 효과적인 관리, 소비자의 제품 이해도 향상,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의 위스키 제품 확대 등에 따라 현재 불법 주류는 사실상 근절에 가까운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RFID 제도는 본래 유흥업소, 특히 전통적인 유흥 채널에서 발생하던 불법 주류 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홈술’ 트렌드 확산으로 위스키 소비가 대형마트·편의점 등 가정 채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유통

2. 2024년 국세통계 기준
약 3,500만 병×병당 평균
1,000원 추산

관리 체계가 세밀하게 정비되어 있어 불법 주류 유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위스키에는 RFID 태그 부착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현행 제도는 국내 수입업자와 제조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5년간 국내의 세무·유통 관리 환경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고도화된 전자세무행정과 전자세금계산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생산부터 최종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래 이력을 공급망 전반에 걸쳐 투명하게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기반의 검증 체계가 충분히 구축된 현시점에서 모든 위스키 제품에 RFID 태그 부착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행정적 실익보다 산업계의 규제 부담이 더 큰 제도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류위원회는 유럽연합 및 글로벌 관행을 참고하여 위스키 제품이 RFID 태그 없이 유통될 수 있도록 국세청 고시 개정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위스키 RFID 제도의 전면적인 폐지가 단기간 내 어려운 경우, 가짜 양주 유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정 채널에 한해 의무를 우선 폐지하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차선으로는, 가정 채널 판매 비중이 약 95%에 달하는 350ml 이하 소용량 제품에 우선적으로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 둔화와 주류 산업 전반의 어려운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단계적 규제 완화는 업계의 운영 부담을 즉시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350ml 이하 제품에 대한 우선 완화만으로도 연간 약 50억 원³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각 사의 필요에 따라 RFID 태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RFID 태그 부착을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3. 350억 원 수준의 RFID
부착 의무 비용 중 350ml
이하 약 15% 추산

관련	주세법,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4조
관련부처	국세청 소비세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유래근
이사
자동차 위원회

자동차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자동차 위원회는 2026년 백서를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 자율주행, 디지털화 등 급격한 전환의 중심에 있으며, 동시에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목표,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혁신 역량과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위원회는 유럽 기업들의 실제 경험과 글로벌 기준에 기반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 제고, 기술 중립성 확보, 행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그리고 산업 경쟁력을 지원하는 정책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산업 전환기에는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명확한 절차와 합리적 일정에 기반한 제도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15
총 주요이슈

본 백서에 담긴 자동차 위원회의 제안은 한국 시장에 진출한 유럽 기업의 관점에 더해, 한국 자동차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개방적이고 혁신을 장려하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1.
한-미 관세협정에 따른
자동차 인증 개정안
관련 한-EU FTA
최혜국 대우 검토

이슈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6년 6월 30일 고시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에는 한-미 관세협정에 따른 미국 인증·생산 기술인 자동차의 국내 인증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미국 인증기관에 제출한 자료로 국내 인증신청 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 미국 인증서상 동일 차종은 국내 인증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도 배출가스 시험 자동차로 선정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최대보증거리 주행을 통해 인증받은 자동차는 수시검사에서 열화계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관련하여 한-EU FTA 부속서 2-다 제5조는 다음과 같이 최혜국 대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속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에 관한 내국세와 배출 규정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제3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제3국이 원산지인 동종 제품에 부여되는 것보다 더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제품에 부여한다."

'배출 규정'이라 함은 배출인증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당연히 포함하므로 유럽연합에서 인증·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산 자동차에 비해 더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한-미 관세협약에는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와 관련하여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유럽연합 원산지 자동차에 대해서 물량을 단계적으로 한정하여 지정하더라도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하는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자동차위원회는 유럽연합(EU)에서 생산 및 인증된 차량이 한국의 배출가스 인증제도 운영 및 집행 과정에서 제3국 차량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또한 유럽연합 원산지 자동차에 대하여서도 유럽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물량을 단계적으로 한정하여 지정하더라도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하는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 드립니다.

관련규정	1. 대기환경보전법 및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2026.6.30.) 2. 한-EU FTA 부속서 2-다 제5조
관련부처	산업통상부 구주통상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이슈요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 관련, 유럽계 자동차 수입·제작사와의 소통 개선 요청
- 2026년 7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을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자 평가 기준이 5월 13일에 공지되고, 자료 제출 기한이 약 한 달 후인 6월 15일로 설정됨에 따라 새롭게 공지된 기준을 번역·해석하고 준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본사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수입 제작사의 경우 주어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향후 전기자동차 수행자 선정 평가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개발 네트워크와 공급망이 점차 글로벌화됨에 따라 유럽의 수입·제작사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될 경우 해외 본사뿐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 전반을 아우르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 시행 시에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이 매년 갱신될 것으로 예고된 만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준 개정 과정에서 유럽 수입·제작사가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입·제작사의 경우 본사 차원의 자료 준비가 필수적이므로 번역, 요구 기준의 해석 및 구체화, 국내외 관련 법규 검토 등 추가적인 절차와 시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의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고, 평가 기준 및 제출 요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는 소비자의 보조금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준비 기간 확보와 소통 체계 구축은 유럽 수입·제작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자동차 위원회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의 향후 갱신 시 유럽 수입·제작사가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및 의견 수렴의 장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제도 개정 과정의 투명성과 산업계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유럽 수입·제작사의 경우 본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번역, 기준 해석, 내부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지 2026.5.13.)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이슈요약
한-EU FTA 신기술 분야 글로벌 규제 조화/상호인정 요청
- 자동차 산업은 신기술의 유입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규제의 조화는 점차 더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 CSMS / UN R155),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체계(Software Update Management System, SUMS / UN R156), 운전자 제어 지원 시스템(Driver Control Assistance System, DCAS / UN R171)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규제 체계가 점차 정립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EU는 모두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규정을 기반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및 세부 규정 수준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UN R155, R156, R171 규정은 현재 한-EU FTA 부속서 제3조의 시장접근 수용 항목(부록 2-다-3)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자동차 등화 규제는 기술 고도화와 규제 구조 다층화로 복잡성이 증가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및 시장통합을 위해 규제 조화의 필요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분야입니다. 현재 한-EU FTA는 다수의 기존 등화 규정을 기반으로 상호인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UNECE 규제 체계가 R148, R149 및 R150 중심으로 개편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신 기술이 적용된 차량의 형식승인과 FTA 상호인정 체계 간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UNECE는 R149 도입을 통해 기존 복수 등화 규정을 통합함으로써 규제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FTA 부속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최신 규정과 기존 규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제도 간 불필요한 복잡성을 초래하고 규제 준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더불어 에너지 다변화 및 안전성 강화 요구에 따라 수소저장장치(R134), 폐달 오조작 방지장치(R175) 등도 역시 기술의 역동성과 다층화로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등화장치와 같은 이유로 해당 규정의 FTA 상호인정 체계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한-EU FTA 부속서 2-다 제4조 규제 수렴의 강화는 다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가. 언제라도 UNECE 규정 또는 세계기술규정(Global Technical Regulation, GTR)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분야나 그러한 규정의 완성이 임박한 분야,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부록 2-다-2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분야,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부록 2-다-3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분야에서 UNECE 규정 또는 GTR과 다른 새로운 국내 기술규정 도입을 자제한다. 그리고

나. 기존 국내 기술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서 새로운 UNECE 규정 또는 GTR이 UN ECE에 의해 채택된 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UNECE 규정 또는 GTR을 준수하는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제품을 이 부속서 제3조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대우한다.

한-EU FTA 부속서 시장접근 수용 항목 확대를 통하여 신기술 부문의 글로벌 규제조화 및 상호인정/참조를 시의적절하게 도입하고 양 당사자의 신기술 부문 협업 강화와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이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자동차 위원회는 한-EU FTA 부속서의 시장접근 수용

항목에 관련 UN R 규정

- UN R155(CSMS,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에 관한 규정)
- UN R156(SUMS,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체계에 관한 규정)
- UN R171(DCAS, 운전자 제어 보조 시스템에 관한 자동차 형식승인 규정)
- UN R148/149/150(등화장치)
- UN R134(수소저장장치)
- UN R175(폐달 오조작 방지장치, ACPE)

추가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한-EU FTA 부속서 2-다 제4조 규제 수렴의 강화
관련부처	산업통상부 구주통상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온실가스감축 승용/
상용 자동차 부문 목표
명확화 요청

이슈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동안 승용 및 상용차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7월 15일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함에 따라, 정부가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목표 수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해외 주요 시장의 자동차·기후 규제 변화와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 수준과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입 제작사 역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친환경차 전환에 기여하고 있으며,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과 관련 정보가 모든 참여자들에게 더 이른 시점에 공유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나 현재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며 성공적인 목표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또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의 예측 가능성, 충분한 리드타임, 그리고 실효성 있는 이행 지원방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입·제작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용차 부문의 경우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일부 규제가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감축 경로를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소통과 논의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자동차 위원회는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입·제작사를 위한 예측 가능성 및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정기적인 소통창구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1. 대기환경보전법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5. 연비제도 신고제 취지 명확화 및 시설확인 관련 중복 행정절차 해소 요청

이슈요약

연비제도의 운영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처 개편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중복 행정절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비제도는 법적으로 신고제도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험사진, 제작사 확인 공문(예: 사용연료, 길들이기 주행거리 관련) 등 명확하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제도임에도 통관 관련 고시에서는 승인 이후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고제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가 사실상 승인제도처럼 운영되면서 기업이 스스로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율적 관리체계 역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시설적합확인 절차 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산업부 소속 에너지효율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부처 내 교통환경과의 배출가스 시설적합확인 승인 이후 동일 시설에 대해 에너지안전효율과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별도의 같은 신청, 검토, 그리고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비제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신고제도로 명확히 운영하여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중복 승인 및 과도한 증빙자료 요구를 완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합리화 및 효율화는 정부의 부처 통합 및 개편의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자동차 위원회는 연비제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신고제도로 명확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신고를 위한 자료의 명확화를 요청드리며, 불필요한 중복 승인 및 과도한 증빙자료 요구를 완화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교통환경과, 한국에너지공단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6. 전기차 보조금 평가 절차 개선, 인프라 확대 및 규정 명확화 요청

이슈요약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에서 동일 모델 차량을 활용한 평가 허용과 평가 절차의 간소화·시스템화를 통해 보급대상 평가제도의 유연성 확대 및 처리 기간 단축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는 약 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제작사들은 배출가스 인증서 발급 이전 가능한 시점에 평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인증 완료 전 평가 수행 시 1회 충전 주행거리 인증 시험에 사용된 동일 차량으로만 보급대상 평가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제작사의 경우 해당 시험 차량을 국내 평가 대행 기관으로 항공 운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과도한 물류비용 및 일정 지연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작사가 동일 모델임을 보증하고 동일성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 차량이 아닌 동일 모델의 별도 차량으로도 보급대상 평가 수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평가 절차의 시스템화 및 시험·검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제작사가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평가를 수행·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 자료와 실제 차량 간 불일치가 확인될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및 행정 처분 등 사후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관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모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환경공단의 시험 및 평가 인프라는 제한적이어서 보조금 평가 업무 지연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평가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 지정하거나 간소화된 확인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필요한 행정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인증 보고 및 재시험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행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급평가 규정 별표 5의 제16조 나목의 재시험 관련 문구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검토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자의적으로 해석되면서, 1회 충전 주행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작사가 환경공단에 변경인증 보고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인증 절차 지연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급평가 규정 내 변경인증 보고 의무는 평가 항목 또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항목에 영향이 없는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경인증 및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자동차 위원회는 전기차 보조금 평가 절차의 유연성 확보 및 문구 명확화를 위하여,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 관련

1. 제작사가 동일 모델임을 보증하고 동일성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 차량이 아닌 동일 모델의 별도 차량으로도 보급대상 평가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
2.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보조금 평가 업무 지연이 더욱 심화 시 보조금 평가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 지정

보급평가 규정 별표 5의 제16조 나목 관련

3. 재시험 관련 문구 관련 보급평가 규정 내 변경인증 보고 의무는 보조금 평가 항목 또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문구 명확화
(보조금 평가 항목에 영향이 없는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경인증 및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화)

상기 요청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수용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7. 전기차 출시 일정 지연
개선을 위한 절차 및 운영 개선 요청

이슈요약
전기차 출시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고 시장 공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인증 및 평가 절차의 병행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기차 출시를 위해서는 환경 인증 외에도 보조금 평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하며, 각 절차가 순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차 인증기간 자체도 내연기관 차량 대비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인증 완료 이후에도 보조금 평가는 서류 접수 이후, 성능평가에 약 1개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는 기한을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대략 약 2개월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작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내연기관 차량 대비 실제 판매 시점이 최소 2~3개월 이상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출시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 고시

등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등재가 고시 개정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차량 인증이 완료된 이후에도 실제 혜택 적용까지 장기간 대기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동일한 연비 및 제원을 사용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타이어 스펙별로 개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신청이 요구되고 있어 제작사들은 사실상 동일 내용을 반복 제출하는 행정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고시 등재 방식은 전산 승인 시스템 기반의 등록 체계로 전환하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고시 개정 방식에서 발생하는 처리 지연 및 예측 불가능한 운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동일한 연비와 제원을 가진 차량이라면 타이어 규격(스펙)별 개별 신청을 최소화하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중복 신고와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관련 부처 간 긴밀한 정책 연계를 바탕으로 환경 인증, 보조금 평가, 친환경 자동차 등재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통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자동차 위원회는 전기차 출시 일정 지연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1. 현행 고시 등재 방식은 전산 승인 시스템 기반의 등록 체계로 전환하여 절차 개선
2. 동일 연비 및 제원을 가진 차량에 대해서는 타이어 스펙별 개별 신청 최소화
3. 환경인증, 보조금 평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

관련규정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 고시) 2.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의 인증)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부처	산업통상부 자동차과, 한국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8. 결함시정 및 무상수리
검토 절차 및 전기차 환경인증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개선 및 운영 인원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슈요약
결함시정 및 무상수리 관련 검토 절차 및 전기차 환경인증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개선 및 운영 인원 보강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작사가 결함시정 또는 무상수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검토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장기간 검토가 지속되면서 신속한 시장 조치와 환경 개선 효과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토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기존 검토 내용이 충분히 인수인계되지 못하고 사실상 재검토 혹은 공문 재제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동일 안전에 대한 검토가 장기간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제작사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고객 대상 조치 일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결함시정 및 무상수리 검토 절차에 대한 처리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고, 대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는 보다 신속하게 검토·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연기관 인증의 요구가 줄어들지 않음에도 전기차 인증의 숫자는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인증 관련 인증 인원의 부족으로 접수/인증승인까지의 소요 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인증 인원 상황에 따라 규정 해석의 차이를 시의적절하게 해소하기 어려워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자동차 위원회는 결함시정 및 무상수리 관련 검토 절차의 운영 체계 관련하여 결함시정 및 무상수리 검토 절차에 대한 처리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 특히 대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는 보다 신속하게 검토·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개선 검토 요청 드립니다.

또한 전기차 인증 관련 인원 보강을 통하여 인증 소요기간을 단축시키고 소통을 원활히 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 및 53조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9.	이슈요약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운영 기준 개선 필요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과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급 실적 인정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도에 따라, 2030년부터는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무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급대상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급대상 평가는 본래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이를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는 차량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자동차 위원회는 무공해차 보급실적 인정 기준은 보조금 수령 여부와 연계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및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1.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별표 2) 2.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0.
자동차 장착용 유럽 소화기 수입 허용

이슈요약

자동차 장착용 유럽 소화기 수입을 허용 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차량에 순정(OEM) 형태로 장착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소화기 형식승인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별도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각 완성차 제조사 차량에 장착되는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제조사의 품질관리 체계 및 국제 기준에 따라 검증 및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입 시에는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어 완성차 수입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차량에 장착된 상태의 소화기를 그대로 수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OEM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구조와 실내 공간에 맞추어 사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전용으로 설계·제작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내 형식승인 제도로 인해 수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국내 인증 소화기는 차량별 장착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규격·크기·형태인 경우가 많아 차량 내 적절한 장착 또는 비치가 어렵고, 고객 불편과 안전성 저하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제조사가 의도한 최적화된 사용 편의성과 안전 설계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자동차 위원회는 완성차 제조사의 자동차 장착용 소화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식승인 및 국내 시험 절차 없이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1항
관련부처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11.	이슈요약
중·대형 전기 상용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중·대형 상용자동차는 일반 승용자동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배출가스 양이 많으므로, 친환경 중대형차 보급 촉진은 교통 부문에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가 계획되어지고 있습니다. 중·대형 상용자동차 또한 친환경차 국내 보급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의 유럽계 화물자동차 제작사는 친환경 중·대형 상용자동차(전기 화물차)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의 관련 제도 및 인프라 부분에서 중·대형 전기 상용자동차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점들이 존재합니다. 2026년에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보조금이 처음 도입되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수소차와 비교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전기 중·대형 화물자동차는 일반 승용자동차용 충전 시설에서는 충전이 불가능하므로 전용 충전 시설 설치와 같은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자동차 위원회는 친환경 중·대형 전기 상용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대형 상용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기 상용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상향하고, 고출력 충전 인프라 확충, 운행 및 충전 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중·대형 전기 상용차의 보급 여건을 조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중·대형 상용차 부문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보급 기반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될 때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미달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12.	이슈요약
자동차 너비 기준에 대한 유연성 부여	국내의 자동차 너비에 대한 기준이 유럽의 기준과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자동차 너비가 2.5m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의 자동차 너비 규제치는 2.55m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2.55m 너비 기준으로 제작된 유럽의 버스 및 일부 트럭 차량은 국내 수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분야에서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 센서류,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Camera Monitoring System, CMS), 레이더 및 공력 보조장치 등 다양한 신규 장치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 정책 강화, CO₂ 배출 저감 목표 상향, 연비 향상을 위하여 공력장치(Aerodynamic Devices) 장착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저항 감소를 위한 공력장치는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탄소배출 저감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기술 적용을 적극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EU 2021/535, 01/01/2025 consolidated version). 그러나 현행 국내 자동차 너비 측정 기준에서는 일부 공력 보조장치에 대한 명확한 제외 규정이 부족하여 친환경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적용 과정에서 자동차 제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성 및 운행 특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공력 성능 향상 목적의 공력장치에 대해서는 차량 너비 측정 시 제외 항목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기술 확대 및 첨단 운전보조시스템 적용에 따른 자동차 설계 유연성을 확보하고, CO₂ 감축 및 연비 향상 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력 성능 향상 목적의 공력장치 등 유럽에서 차량 너비 측정 시 제외항목으로 정하는 기술에 대해서 국내 규정에도 제외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자동차 위원회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친환경·운전자 지원 시스템 도입에 따라 시장 간 너비 기준의 호환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으로 2.55m까지 자동차 너비 기준에 대한 유연성 부여를 건의합니다.

더불어 차량 너비 측정 시 제외 항목에 대하여 유럽 기준의(공력장치 등) 수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13.	이슈요약
고객이 설치한 부품 및 장치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 방안 검토	완성차 제작사의 자동차 출고 이후 고객이 설치한 부품 및 장치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안전도를 제고하고 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미완성자동차 및 단계제작자동차에 대한 자기인증제도를 도입·정비한 기본 취지는 '단계적으로 제작되는 자동차' 산업 확대에 부응하면서 안전책임을 강화하여 자동차 안전을 제고하는 것이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완성자동차'와 '단계제작자동차'의 개념을 법령에 도입하여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고, 각 제작 단계별 제작자가 자기 단계에서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하며, 제작 이력과 인증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여 차량 안전성을 확보하고, 특장·튜닝 산업을 제도권 안에서 육성하려는 의도가 바탕이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특장 산업이 활성화되었으나, 여전히 우려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객이 설치한 부품 및 장치로 자동차 안전이 저하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임의로 변경한 전기장치 등으로 화재 위험이 발생하며,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고, 완성차 제작사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고객이 설치한 부품 및 장치로 인한 최종 상태 차량의 위험 요인을 사고 발생 전에 검사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자동차 위원회는 완성차 제작사가 자동차를 출고한 이후 고객이 설치한 부품 및 장치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연구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4.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개정 논의 관련

이슈요약

2025년과 2026년에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표시 등에 대한 규정의 개정이 검토되어지고 있습니다. 고효율 제품으로의 소비자 선택을 권장하고자 하는 정책 의도는 이해되나, UN R117 기반으로 하는 타이어 관련 시험만으로는 개정되는 등급제 규정을 만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점들이 있습니다.

- 사후관리 허용오차 범위에 대한 통계적인 안전망 확보를 위한 추가시험이 많아질 우려가 깊습니다.
- 신고값과 등급경계 간 해석의 불분명함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각 시장별 등급제 규정의 상이함이 심화됨에 따라 시장별 대응 시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UN R117 조화 의미가 퇴색되어 버림)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자동차 위원회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표시 등에 대한 현재 규정의 유지를 요청드리며, 새로운 등급기준 개정안 도입 시 추가시험 최소화, 규정의 명확성으로 사후관리 리스크 명확화·UNR117에 따라 시장 간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한국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실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5.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 시행 관련

이슈요약

2026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가 시행되었으며, 유통 중인 기존 재고를 고려하여 2026년 이전에 제작·수입된 승용자동차용 교체타이어에 대해서는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제작사가 유통망에서 겪을 수 있는 혼선은 일정 기간 완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형 트럭용 타이어 및 트럭·버스용 타이어에 대해서도 각각 2028년과 2029년부터 운행차를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타이어 소음등급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제작·수입 단계에서 성능 검증, 신고 및 표시 의무가 부과되는 제품 규제 체계로 기본적으로 생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도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제작·수입된 제품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표시 의무를 부과하거나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제작·수입사가 유통 이후 전 단계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의 신뢰 가능한 정착을 위하여서는 제작·수입사의 소음 측정에 관련한 예측 가능성과 상관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공인 측정 시설과 제작·수입사의 소음 측정 상관성 진행이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자동차 위원회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1. 타이어 소음 규정 적용은 판매 일자가 아닌 생산 일자(DOT code)로 변경 (타이어에너지효율제도와 동일성 및 관리의 목적)
2. 국내 공인 측정 시설과 제작·수입사간의 소음 상관성 진행

검토 요청 드립니다.

관련규정	소음·진동관리법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한국환경공단 생활환경지원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화학

지난 한 해 동안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학 위원회는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산업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수준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주요 화학물질 규제 이슈에 대해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정책 개선을 이끌어낸 점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또한 회원사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함으로써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백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규제 강화와 기업의 준수 부담 증가에 따라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인 규제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권고안은 현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글로벌 규제 트렌드와의 정합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백서가 정부와 산업 간 건설적인 협력과 소통을 촉진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6 총 주요이슈

1. 화평법과 상이한 산안법의 화학물질 목록으로 인한 업계 부담 완화	이슈요약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0조도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법령에 의한 중복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안법 시행규칙 제147조는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한 경우 이를 산안법상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법령 간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의 판단 기준과 적용 방식이 상이하여 업계는 여전히 등록·신고 및 규제 준수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평법은 법 제2조 제3호 및 관련 고시에서 기존화학물질을 정의하고 있는 반면, 산안법은 기존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 제85조에서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	--

화학물질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산안법상 조사 제외 대상과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안법상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가 사업장 내 취급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자 보호 목적이 반드시 동일 화학물질에 대해 화평법과 산안법상 유해성 자료 제출 절차를 별도로 중복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화평법상 등록·신고자료를 산안법상 사업장 노출관리 체계와 연계한다면, 근로자 보호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제조·수입자의 중복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화평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되고, 1톤 미만 물질은 신고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산안법상 100kg 이상 1톤 미만 물질에 대해 별도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유지될 경우, 동일 저톤수 물질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신고, 고용노동부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원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는 저톤수 물질에 대한 규제 합리화라는 화평법 개정 취지와 조화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 제도의 목적 차이는 존중하되, 동일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 제출 절차는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학 위원회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 산안법 시행규칙 제147조를 개정하여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등록’뿐 아니라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도 산안법상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간 자료 공유 체계를 확대하여 화평법상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신고자료, 유해성심사 결과 및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가 고용노동부에 제공될 수 있도록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정보 공백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제조·수입자의 중복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을 산안법 시행령 제85조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건강 보호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고위험 물질 등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요청권을 유지함으로써 정보 연계와 근로자 보호가 병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장기적으로는 동일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자료 제출 창구를 화평법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산안법은 작업장 내 실제 노출 조건과 위험관리 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역할을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2.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25호)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 기존화학물질(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 2026-103호)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2.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면제 사항 중복 규제 해소

이슈요약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시행규칙 제147조 제1항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산안법상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화평법상 등록 절차와 산안법상 조사보고서 제출 절차가 중복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화평법상 등록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이러한 중복 완화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평법 제11조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또는 신고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등록 등 면제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안법 시행규칙 제150조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이 화평법상 등록 또는 신고 면제 대상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화평법상 등록 등 면제 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이라도 산안법상 별도의 조사 제외 확인 또는 조사보고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물질은 화평법상 등록등면제확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산안법상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산업계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 표면 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

산안법상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가 사업장 내 취급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화평법상 등록 등 면제 확인을 받은 물질에 대해 산안법상 별도의 확인 절차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동일 물질에 대한 행정절차의 중복으로 이어지고 있어 규제 조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학 위원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 산안법 시행규칙 제147조 및 제150조를 개정하여, 화평법 제1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가 면제되었거나 등록 등 면제 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산안법상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거나 조사 제외 확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안법상 별도의 조사 제외 확인서 발급 절차를 최소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간 자료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고용노동부가 화평법상 등록 등 면제 확인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동일 물질에 대해 기업이 양 부처에 유사한 자료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 제1항, 제150조, 제151조 제1항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3. 국내 제조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시 화학물질 확인서류 허용

이슈요약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통칭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제품 내 전성분 정보를 하위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04조의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제품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제출이 의무이며(제110조 제1항),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도 성분 정보 제출 대상(제110조 제2항)입니다.

다만, 수입 화학제품의 경우 국외 제조자가 해당 제품에 산안법상 유해성·위험성 분류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즉 국외제조자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 LOC)를 제출함으로써 일부 성분 정보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외 제조자가 제품의 상세 조성 및 비유해성 성분까지 영업비밀로 관리하여 국내 수입자가 전성분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이러한 LOC 활용은 '수입자'에게 한정되어 있어, 동일한 국외 제조자의 동일한 제품이라도 국내 사업자가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다른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국내 사업자는 산안법상 '제조자'로 간주되어 최종 제품에 대한 MSDS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수입 원료의 상세 성분 정보를 국외 제조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해당 수입 원료가 산안법 제104조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국내 제조자는 LOC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국내 제조자는 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국외 제조자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로 성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협력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 제조자인 A사가 산안법상 유해성·위험성 분류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화학제품을 국내 제조자인 B사에 공급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B사가 이를 단순 수입·사용하는 경우에는 A사의 LOC를 활용할 수 있으나, B사가 동일한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다른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로서 최종 제품 MSDS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B사는 A사의 전성분 정보를 요구해야 하나, A사가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경우 현행 제도상 법적 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공급원, 동일한 원료, 동일한 비유해성 확인 자료가 존재함에도 제품의 사용 방식과 국내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성분 정보 제출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제도 운영상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본 건의는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유해성 수입 원료에 대한 확인 방식이 수입자와 제조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하자는 취지입니다.

현행 제도상 수입자는 국외 제조자가 발행한 LOC를 통해 비유해성 성분 정보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동일한 수입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동일한 LOC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제품임에도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수입자인지 제조자인지에 따라 상이한 규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해성·위험성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에 대한 정보 제출 규정이 국내 '수입자'와 '제조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 국외 제조자가 해당 제품에 유해성·위험성 분류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해당 LOC의 발행 및 제출을 국내 제조자에게도 허용
- 동일한 수입 제품에 대해 이미 제출된 MSDS가 있는 경우, 국내 제조자가 최종 제품 MSDS 제출 시 해당 수입 제품의 MSDS 제출 자료를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7조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4. 영업비밀 물질의 비공개 승인 개선

이슈요약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1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함유량을 영업비밀로서 대체 명칭 또는 대체 함유량으로 기재하려는 경우,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비공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은 상업적 제품으로 유통되지 않고, 통제된 연구실 등 제한된 장소에서 소량 사용 후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제조·수입 또는 유통 제품과 노출 양상 및 위해 가능성이 다릅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관련 연구에서도 연구개발용 제품의 심사로 인한 비즈니스 진행 지연과 소량 취급 등 위험이 비교적 낮은 제품군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구·개발용 물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공개 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 해당성 입증자료 등 일부 제출자료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안법 시행규칙 제161조 제2항도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의 자료를 생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간소화는 일부 제출 자료 생략에 그치며, 연구·개발용 물질도 여전히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비공개 승인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상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신청은 총 1개월의 처리 기간으로 안내되고 있어, 소량·단기간·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활동에는 여전히 시간 지연과 일정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실험 대상 물질, 조성 및 함유량이 빈번하게 변경될 수 있고 최종 상업화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물질에 대해 개별 제조·수입 전마다 사전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연구개발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저해하고, 위해 가능성이 낮은 사안에 행정기관의 심사 역량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행 MSDS 체계에서는 영업비밀 물질이라 하더라도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 취급·저장 방법, 보호구, 폐기방법 등 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안전정보가 제공됩니다. 또한 산안법 제112조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의사,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근로자 대표 등이 대체 자료로 기재된 화학물질의 실제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소량 제조 또는 수입되어 통제된 장소에서만 사용·폐기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현행 심사절차 간소화에서 더 나아가, 사전 비공개

1.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제도 발전방안 연구

승인 의무를 면제하되 실제 성분 정보의 내부 기록 보관, 감독기관 또는 보건 전문가 요청 시 정보제공 등 사후관리 중심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소량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안전관리 요건을 충족하면 산업법 제112조에 따른 사전 비공개 승인 없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 명칭 또는 대체 함유량을 기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다만, 근로자 보호를 위해 MSDS상 유해성·위험성 및 안전조치 정보는 현행과 동일하게 제공하고, 실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은 사업장 내부에 기록·보관하며, 산업보건의 등 보건 전문가의 요청, 산업재해 조사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유통 금지, 통제된 장소 내 사용, 사용 후 적정 폐기, 고위험 물질 제외 등의 요건을 함께 부과한다면 근로자 보호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연구개발 활동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1조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5. **이슈요약**
 살생물제품 중 향료
 성분의 유·위해성 자료
 제출 범위 완화 요청

2024년 4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살생물제품 중 향료 성분의 유·위해성 자료 제출 범위 안내문'을 통해 살생물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의 유·위해성 자료 제출 범위를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안내문은 제품의 제형·용법상 흡입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제품 내 향료 함량이 0.1% 미만이면 유해성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0.1% 이상이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해우려물질은 함량과 관계없이, 알레르기물질은 제품 내 총함량이 0.01% 이상인 경우 노출 경로와 관계없이 유해성 자료 제출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살생물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구성성분의 유·위해성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향료는 일반적으로 제품 내 함량이 매우 낮고, 향료를 구성하는 개별 성분은 ppm 단위의 극미량 수준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향료 개별 성분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유해성 시험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실제 위해성 기여도와 자료 확보 가능성에 비추어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안내문만으로는 향료 개별 성분에 대해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만 제출하면 충분하지, 또는 그 근거가 되는 시험결과, 원본 자료, 신뢰도 2 이상의

시험·문헌자료까지 요구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업계의 예측 가능성이 낮습니다.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 작성 규정이 QSAR, read-across,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의 유해성평가 결과 등 대체자료 활용을 일정 요건하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향료 성분에 대해서도 낮은 함량, 실제 노출 가능성 및 자료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출자료의 범위와 인정 기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제품에 향료가 사용되는 이유를 단순히 소비자 기호나 판매 촉진 목적으로만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 살생물제품은 활성성분, 용제, 계면활성제 또는 기타 기초 원료에서 강한 특이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향료는 이러한 원료취 또는 오취를 완화하여 사용자가 제품을 표시사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제품에서 향료는 제품에 향을 부여하는 목적뿐 아니라 제형 내 바람직하지 않은 냄새를 상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능성 성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살생물제품은 표시된 사용 방법 등 안전주의사항에 따라 사용되어야 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예를 들어 소독제의 경우 제품 라벨에는 대상 미생물, 적용 표면, 사용 방법, 접촉시간 및 안전주의사항 등이 포함되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품의 냄새가 과도하게 불쾌하거나 자극적으로 인식될 경우, 사용자가 권장 접촉시간 전에 제품을 닦아내거나 임의로 희석할 수 있고, 제품 사용 자체를 회피하는 등 표시사항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제품에서 향료는 단순한 기호성 성분이 아니라, 라벨 지시에 따른 적정 사용성과 사용 순응도를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성 성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성 요소는 공중보건 목적의 위생제품에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인정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손 위생 지침은 손 위생 제품 선택 시 향균효과뿐 아니라 사용자 수용성도 주요 결정요소이며, 제품의 향, 질감, 색상 등이 사용자의 수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생물제품 전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생·소독 목적 제품에서 제품 특성이 실제 사용 준수와 지속적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참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이에 따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학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향료 성분 관련 유해성 자료 제출 요건에 대한 개선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1. 위해우려물질(Substances of Concerns, SOC)에 해당하지 않는 저함량 향료 성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건 완화
 향료 전체 함량이 0.1% 이상인 경우에도 개별 향료 성분이 제품 내 극미량으로 존재하고 해당 성분이 위해우려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품의 유해성 분류·

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신뢰도 2 이상의 6-pack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보다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공개 DB, 문헌자료 또는 공급망 확인자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제품 내 모든 성분에 대한 확인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출 가능성과 위해성 기여도가 낮은 향료 성분에 대해 자료 제출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2. 유해성 자료 인정 범위의 명확화 및 대체자료 수용 확대

향료 개별 성분에 대해 요구되는 자료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GHS 또는 국내외 CLP 기준에 따른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 RIFM, IFRA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향료 관련 기관의 평가자료 또는 안전성 정보
- ECHA, OECD, EPA 등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자료
- QSAR, read-across, weight-of-evidence 등 비시험자료
-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전성분 확인서, CoA, SDS 또는 PSDS 등 공급망 기반 자료

현행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 작성 규정도 일정 요건하에서 대체자료 활용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향료 성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살생물제품 중 향료 성분의 유·위해성 자료 제출 범위 안내문(국립환경과학원, 2024.04.18.)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화학물질안전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6.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심사 시 해외 승인·평가자료 인정 및 신속검토 제도 도입

이슈요약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제도는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사전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미 유럽연합 살생물제법(EU BPR),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 주요 해외 규제 체계에서 평가 또는 승인된 물질·제품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유사한 자료 제출과 평가가 반복될 경우, 기업의 자료 준비 부담과 정부의 심사 부담이 모두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살생물제품 승인 절차가 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승인심사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산업계와 규제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내 안전성 평가의 독립성과 국민건강 보호 목적은 유지하되, 신뢰 가능한 해외 승인·평가자료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U BPR은 살생물물질의 EU 차원 승인과 살생물제품의 국가승인, 상호인정 및 유럽연합 공동체 승인(Union Authorisation)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절차에서 생산된 평가보고서, 유해성·위해성 평가 결과, 효능평가 자료 및 승인조건은 국내 심사에서도 참고 가능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 보건안전청(HSE)의 영국 살생물제법(GB BPR) 개혁 논의에서 보듯, 해외 승인 인정 및 위해성 기반 재검토 체계는 승인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논의 방향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학 위원회는 국내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심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중복자료 제출과 반복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 승인·평가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 마련을 건의드립니다.

EU BPR, 미국 EPA 등 주요 해외 규제체계에서 이미 평가 또는 승인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평가보고서, 유해성·위해성 평가 결과, 효능평가 자료 및 승인조건 등을 국내 심사에서 인정 또는 참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 사용조건, 노출 시나리오, 제품 제형, 표시사항 및 취약계층 노출 가능성 등이 해외 승인조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자료 제출을 완화하고 신속검토 대상으로 분류하는 절차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조건이 해외 승인조건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차이에 따른 위해성 영향을 중심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자료를 요구하되, 이미 해외에서 평가가 완료된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 자료의 반복 제출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화학물질안전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화장품

3

총 주요이슈

1.
화장품
수입통관예정보고
(EDI) 절차 개선에
대한 검토

이슈요약
산업통상부 통합공고에 따르면 수입화장품은 수입통관 전에 전자문서교환방식(EDI)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KPT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수입화장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2028년부터 제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부담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가 점진적으로 시행됨과 더불어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EU에서는 화장품 정보를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CPNP)에 입력하는 형식인 데 반해 한국에서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의사항
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장품 위원회는 통합공고에 의해 수입 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입 화장품의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 개선에 대한 검토를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산업통상부 통합공고
관련부처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기능성화장품
자외선차단지수(SPF)
표시 개선

이슈요약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자외선차단지수(이하 SPF) 측정결과에 근거하여 평균값(소수점 이하 절사)으로부터 -20% 이하 범위 내 정수(예: SPF 평균값이 '23'일 경우 19~23 범위 정수)로 표시하되, SPF 50 이상은 'SPF50+'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측치가 SPF 50에 근접한 경우부터 SPF 60을 상당히 초과하는 높은 수치의 경우에도 일괄 SPF 50+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정확한 SPF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실측치 50~59.9인 경우 SPF 50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해외 규정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입 제품의 경우 원제품에 표시된 SPF 수치와 다르게 표시 기재해야 하므로 오히려 SPF 지수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업계는 추가 라벨링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유럽에서는 SPF 측정결과가 50~59.9인 경우 'SPF 50'으로 표시하고, 60 이상인 경우 'SPF 50+'로 표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European Commission Recommendation 2006/647/EC)

건의사항
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장품 위원회는 자외선 차단 시험 실측치가 50~59.9인 경우 SPF 50으로도 표시될 수 있도록 자외선차단지수 표시법 개선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1.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2호 2.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 1호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화장품심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화장품 해외 제조원
주소지 표시 기재 개선

이슈요약
현행 「화장품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와 구분하여 추가로 한글로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의 안내 목적이 정보 추적성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영어)로 기재하도록 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수입 제품의 경우 통관 시 요구되는 서류에도 포함된 제조원의 정보가 영어로 기재된바, 근거 서류와 부합된 정보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장품 위원회는 화장품 해외 제조원 주소지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영어)로 기재가 가능하도록 건의합니다.

이는 202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 혁신 간담회에서 수용된 안건이며, 또한 2025년도에도 ECCK 백서 안건으로 제출되었던 건의사항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소관부처인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로부터 '수입화장품의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에 대해 수출국 언어로 기재하는 것은 한글 번역 중 오역이나 표기 오류를 방지하고, 추적성 및 식별 정확성 확보 등을 고려해 수용 가능하다'고 백서 검토결과를 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1.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 사항) 2.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 2. 라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김경현
매니저
디지털 위원회

디지털

최근 디지털 및 통신 기술의 발전은 고도로 통합되고 상호 연결된 플랫폼 기반 생태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모바일 운영체제, 단말,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및 주변기기는 이제 기업의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의 정보 접근, 연결성 확보 및 디지털 경험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가 규모와 복잡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기술이 설계되고 이용되는 방식을 규율하는 기술적·제도적 조건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디지털 위원회는 기술 변화에 발맞춘 보다 적절한 규제 체계의 발전을 위해 안테나 일체형 5G 및 차세대 장비에 대한 무선국 검사 요건 개선을 건의합니다. 이는 규제가 기술적으로 적합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는 동시에 혁신, 공정경쟁, 운영 신뢰성, 안전, 보안, 소비자 선택권 및 이용자 신뢰를 함께 뒷받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디지털 위원회는 본 건의를 통해 정책 당국, 산업계 및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논의에 기여하고, 균형 있고 경쟁력 있으며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총 주요이슈

1. 무선국 검사용 측정 단자 설치 요건 개선

이슈요약

현행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업무 처리기준'상 이동통신 무선국의 성능검사는 무선장비의 측정 단자(모니터링 포트)에 계측기를 직접 연결하는 전도 측정을 사실상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테나와 라디오가 분리되어 별도의 접속점을 둘 수 있었던 이전 세대 장비 구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두 부분이 하나로 통합된 현행 5G 장비 구조 및 세계 주요 통신시장의 검사 관행과는 근본적인 괴리가 있습니다.

5G 상용화 이후 송수신부와 안테나가 일체화된 능동 안테나 시스템(Active Antenna System, AAS) 기반 다중 입출력 장비가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각 경로마다 측정 단자를 설치하는 것은 설계 복잡도가 크게 늘고, 원가 상승 압박이 가해지며, 내구 성능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차세대 장비에서는 RF 경로가 수백 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물리적 측정 단자를 마련하는 접근 자체가 기술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려면 한국 시장만을 위한 별도의 하드웨어 설계 변경과

추가 공정이 필요하여, 제품 출시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공급 일정의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특히 측정 단자 설치가 불가능한 일부 최신 모델은 국내 출시 자체가 제약되어 글로벌 시장의 최신·최고 사양 제품이 적기에 도입되지 못함에 따라, 수입 장비 본연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규제 요인으로 인해 국내 시장 경쟁력이 제약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체형 장비는 고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측정자가 계측을 위해 설비에 직접 접근해야 하는 현행 방식은 작업자 안전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건의사항

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디지털 위원회는 최소한 안테나 일체형 다중 입출력 무선국의 성능검사에 있어 물리적 측정 단자 설치를 필수 요건으로 고정하지 않고, 대체 측정 방식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 첫째, 일체형 안테나 구조에 맞춰 무선 신호를 공중으로 방사한 상태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OTA(Over-the-Air, 복사) 측정 방식이 가능합니다. OTA는 3GPP가 적합성 시험 표준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자 기반 측정을 전제로 한 현행 규정은 국제 표준 관점에서 이미 과도기적입니다. 빔포밍과 대규모 배열을 전제로 하는 6G 후보 대역에서는 OTA가 기술적으로 타당한 평가 체계가 됩니다.
- 둘째, 기지국 장비가 자체 보유한 관리·운용 기능을 활용하여 핵심 지표를 상시 기록·제출하도록 하는 원격 모니터링 기반 검사의 병행 검토입니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장비 내장 모니터링은 일회성 현장 측정보다 오히려 상시적 검증을 가능하게 하므로, 검사의 신뢰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장 측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측정 단자 의무가 완화되면 국내 통신사업자는 글로벌 기술 진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공급사는 시장 수요에 맞춰 적기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글로벌 최신 사양의 제품군을 차별 없이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측정자가 고위험 고소 작업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필요가 없어져 작업자 안전이 제고되는 효과도 함께 기대됩니다.

관련규정	전파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시행규칙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별표 2] 성능검사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신혜원
매니저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

에너지 및 환경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에너지 안보 강화, 탄소중립 이행,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한국의 장기 에너지 전략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프로젝트가 계획 단계에서 실제 이행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장기적인 정책 명확성, 적기 인프라 구축, 그리고 시장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육상 및 해상풍력 사업은 긴 개발 기간, 대규모 초기 투자, 그리고 정부, 산업계, 금융기관, 계통 운영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조율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한 제도 운영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금융조달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추어 추진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유럽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개발, 기술, 금융조달,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럽 기업들은 실무 경험, 선진 기술, 장기 투자를 통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는 산업계의 실무적 관점을 공유하고, 보다 투명하고 경쟁력 있으며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건설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건의사항은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 투자 신뢰도 강화, 공정하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개발 환경 조성을 통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는 한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10
총 주요이슈

1.
육상풍력 계측기
유효지역의 유효기간
지정

이슈요약

현재 여러 사유로 상당수의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전사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는 이유 중에는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된 사업부지에 대하여 사업이행 역량이 있는 신규 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별표 2]의 제8조 및 제9조로 인하여 허가 취소된 사업자의 유효지역은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도 제한 없이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반경 2km에 달하는 계측기 유효지역 (약 12,561,000m², 또는 380만 평)에 대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효과를 초래합니다.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된 사업자 또는 사업이행 역량이 없는 사업자가 풍력 자원이 풍부한 부지에 대한 개발 권리(유효지역)를 무기한으로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허가 취소된 사업자가 계측기 설치 허가를 거래(매각)할 수 있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허가는 대상 부지에 대한 토지주의 사용 동의만 확보한 상태에서 부여되는바, 사유지에 대한 권리 또한 법적으로 유효한 등기상 권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의사항

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계측기 유효 지역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을 설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별표 2]의 제8조의 “다만, 발전사업대상부지에 국공유지 또는 공유수면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국공유지, 사유지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을 공히 3년으로 제한할 것을 건의합니다.

일부 사업자가 계속 허가 및 계측기 설치만으로 풍향이 좋은 지역을 무기한으로 점유하게 허용하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30년까지 육상풍력 6GW 보급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별표 2] 풍황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관련부처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 제8조, 제9조
건의사항 조치현황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개정

2.	이슈요약
해상풍력 계획입지 입찰 전 사전 공개 데이터 및 부지 선정 신뢰성 제고	정부 주도로 전환되는 계획입지 입찰은 사업자가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후 입찰 참여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 부지에 대한 충분한 기초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입찰 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전 지질조사의 데이터 범위와 품질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해외 해상풍력 선진 시장인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의 경우 정부가 실시한 사전

지질조사의 데이터를 입찰 시작 최소 6개월 이전 또는 상시로 게재하여 사업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입지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범위와 양질의 조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입한 비용은 추후 낙찰 사업자로부터 회수 가능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예비지구에 대해서 정부가 수행하는 지질·해양물리 조사 범위와 조사 데이터의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 확보하고, 유럽 주요 시장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충분히 제공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추가로 입찰 부지는 정부의 사전 지질조사를 바탕으로 기술적·경제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평가 결과를 최소 입찰 시작 6개월 전에 공고하여 충분한 입지 분석을 통해 사업자가 경쟁력 있는 입찰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해상풍력특별법 제14조, 제15조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추진단,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이슈요약
해상풍력 계획입지 입찰 평가 고도화 및 발전공기업 협력 모델 구체화	계획입지 입찰의 평가 기준은 기존 REC 입찰 방식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계획입지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계획입지 입찰 전 통합 예정인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인센티브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가 발전공기업과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입찰 참여를 결정하는 데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는 계획입지 입찰은 입지에 대한 사전 리스크를 정부가 입찰 전 사전에 해소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제도인 만큼 평가 시 사업자의 프로젝트 실행 역량, 발전 단지 운영에 대한 기술적 역량 및 글로벌 사업 수행 경험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안정성 및 기술적 완성도를 담보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계획입지 입찰 평가 시 향후 통합될 발전공기업의 인센티브에 대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조기에 제시하여 사업자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해상풍력특별법 제15조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추진단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 기준 개정

이슈요약
2025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는 현행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 기준이 해상풍력발전지의 실질적인 입지 여건보다는 가장 인접한 육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해상풍력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해안에서 상당히 떨어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소와 같이 실질 가치를 반영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과도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사업비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상풍력특별법」 특례조항 신설에 따라 고시 형태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에 대한 적합한 산정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는 해상풍력의 입지 및 사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 산정 기준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고시가 마련되지 않아, 해상풍력 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산정 방식, 적용 대상, 적용 시점 등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은 장기간의 개발 기간과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사업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는 사업비, 입찰가격, 금융조달 및 최종 사업성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따라 향후 국가계획 기반의 해역 지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제도와 연계하여 해상풍력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는 정부가 2025년 답변을 통해 검토 중이라고 밝힌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 기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해당 고시 제정 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 기존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에게도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적용 시점 및 경과조치를 명확히 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5. RPS 일몰 후 REC 입찰 과도기 조치 마련

이슈요약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폐지와 더불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를 가격 중심의 경쟁입찰 제도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정부도 2027년 RPS 폐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개발사업들은 현행 RPS 제도와 REC 가중치 체계를 전제로 사업경제성을 검토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제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가중치 또는 수익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입찰 방식이 급격히 변경될 경우, 이미 개발 중인 사업의 사업성이 훼손되고 금융조달 및 투자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은 인허가, 계통, 금융 조달, 공급망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므로, 제도 전환 시 기존 사업의 투자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을 보호할 수 있는 과도기 조치가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는 RPS 폐지 이후에도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 동안 현행 REC 가중치 체계를 전제로 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과도기 조치를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제도 전환 초기에는 REC 고정가격계약의 구매자(offtaker) 구조를 한국전력공사(KEPCO)로 단일화하는 과도기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RPS 폐지 이후에도 기존 개발사업의 투자 연속성을 보장하고,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 대한 투자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규정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8391) 제12조의 13 및 부칙 제2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15929) 제12조의 14 및 부칙 제2조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추진단 / 재생에너지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6. 거시경제 악화에 따른 해상풍력 투자위험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이슈요약
해상풍력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외화 기반 기자재, 해상 시공, 설치선 등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병목은 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적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반면, 고정가격계약 제도에서는 낙찰 가격이 장기간 고정되므로, 거시경제 여건이 급변하거나 특히 악화된 경우 비용 상승분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해 입찰 참여 위축, 금융 종결 지연, 낙찰 후 사업 지연, 국내 공급망 투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원화가 약 20~30% 평가절하된 상황에서는 약 10% 수준의 균등화발전비용 증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는 인플레이션과 연계한 정산 가격 조정, 보증 확대, 환헤지 비용 지원 조항 신설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1.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2.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련 고시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해상풍력추진단,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7. 해상풍력 실사업자 보호를 위한 계통 접속 용량 재배분 기준 명확화	<u>이슈요약</u> 현행 계통 접속 관리에서는 허수·지연사업 판단 시 평가 마일스톤, 사업자 소명 절차, 재배분 순서가 세부 규정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망 회수 및 재배분 방식은 단기간에 개발·건설이 가능한 태양광 사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

해상풍력은 인허가, 금융조달, 공급망 계약이 장기간 병행되므로, 계통 불확실성이 금융종결과 착공 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상업운전개시일(Commercial Operation Date, COD) 5~6년 전에 망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사업자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건의사항

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는 평가항목, 소명절차, 재배분 순서를 이용규정 또는 기타 규정·고시에 명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1. 전기사업법 2.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2조(이용계약의 해지 등)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 계통운영혁신과,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8. 해상풍력 전력계통 적기 접속 보장 및 계통접속 지연에 대한 보상 제도화	<u>이슈요약</u> 해상풍력의 금융조달 가능성(bankability)은 적기 계통 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계획입지의 경우 정부가 입찰 전 계통 계획 등을 사전에 설계하지만, 이에 대한 적기 계통 여부는 보장되지 않아 낙찰 후 금융조달에 있어 여전히 중대한 리스크로 여겨집니다. 또한 계획입지의 경우 1GW 이상의 규모에 해당할 때 송배전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범위가 고시로 위임되어 해상
--	---

외부망의 포함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유럽의 해상풍력 선진 시장인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의 경우 국가 송배전사업자가 해상변전소부터 육상계통 시설까지 계획, 건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계통 지연에 대한 금전적 보상 체계를 규제화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는 「해상풍력특별법」상 송배전 사업자가 구축하는 공동접속설비의 범위를 당초 법령안에 규정했던 바와 같이 해상 외부망 케이블부터 육상계통 설비까지임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건의합니다.

계통 지연은 궁극적으로 사업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의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금융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통 접속 시점을 명확히 하고, 지연에 대한 보상 및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해상풍력특별법 제27조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추진단 / 전력망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9. 해상풍력 실사업자 보호를 위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과 고정가격계약 간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사업 불확실성 완화	<u>이슈요약</u>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은 이용개시일 연기 사유를 전기사용개소 공사계획 인가(신고)로만 제한하여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체결, 금융 종결 등 현실적인 연기 요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권의 리스크 평가 시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계통 안정도를 위한 선접속 후제어 적용 시 출력제어분에 대한 보상 기준이 없어 장기 고정가격계약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매출예측성, 설계 효율, 금융기관의 사업성 평가 등을 보완할 제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	--

건의사항

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는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 내 이용개시일 연기 사유에 PPA 체결, 금융 종결 등 현실적인 연기 요건을 반영하고, 출력제어 보상 기준을 신설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1. 전기사업법 2.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0조, 제29조 3.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현행)
------	---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한국전력공사 계통계획처 / 배전계획처, 전력거래소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0. 시운전 발전량 REC 매출 인정 및 판로 확보
- 이슈요약**
2025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규칙 개정으로 단계적 사용전검사 시 최초 전력거래 개시 승인일부터 REC 발급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운전 기간 중 발급된 REC가 고정가격계약에 편입될 수 있는지, 또는 현물시장 축소 또는 폐지 시 어떤 경로로 매도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특히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폐지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REC 고정가격계약에 선정된 사업자도 준공 전 단계적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REC를 수익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은 단계적 시운전 기간이 길어, 시운전 REC의 매출 인정 여부는 초기 현금흐름, 금융비용, 사업성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의사항

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는 시운전 기간 중 발급된 REC가 고정가격계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약 적용 시점을 현행 최종 사용전검사일 기준에서 최초 사용전검사일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현물시장 축소 또는 폐지에 대비하여 공급의무자 또는 지정 구매자(offtaker)를 통한 매수 경로를 명확히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0MW 초과 해상풍력의 경우 REC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70~78개월(6~6.5년) 이후 상업운전개시일(Commercial Operation Date, COD)이 도래하는 것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에서 새로운 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시운전 REC 판매경로 확보를 위한 추가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의 단계적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 공백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사업성 평가 및 투자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규정	1.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2.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3. REC 현물시장 운영기준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추진단 / 재생에너지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이정현
매니저
가족친화미래 포럼

가족친화 미래

한국은 초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시장 구조 전반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력 부족, 돌봄 부담 증가, 경력 단절 등으로 이어지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가족친화미래 포럼은 변화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기업의 인력 운영 방식과 근로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포럼은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복지 차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기업 경쟁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재정의하고, 제도의 도입을 넘어 실제 활용과 정착에 주목합니다.

본 백서에 담긴 제안을 통해 가족친화제도의 정착과 확산, 기업 참여 확대, 그리고 근로자의 제도 이용 편의성 향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3 총 주요이슈

1. 청년 생식건강 증진 및 예방 중심 정책 전환

이슈요약

초저출생 대응을 위해 임신 및 난임 치료 중심의 사후 지원 정책은 확대되어 왔으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생식건강 관리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사후 지원 중심 정책에 비해 예방적 생식건강 관리가 충분히 발전되지 못함에 따라, 청소년 및 청년층의 정보 접근성과 사전 관리 기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방 및 조기 진단을 지원하는 국가검진 체계와 민간 협력 기반도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생식건강 관리뿐 아니라 향후 출산 선택에도 영향을 미쳐 저출생 대응 역량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 관련 복지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를 확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가족친화미래 포럼은 생식건강 교육, 조기 진단, 가임력 보존 지원 확대 및 민간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예방적 생식건강 정책을 공고히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생식건강 교육 및 조기 진단 접근성 확대를 통해 생애 전반에 걸쳐 적시에 생식건강을 관리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 인력 관리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교육 및 직장 내 교육 체계에 생식건강 교육을 포함하고, 국가건강검진 내 기초 생식건강 검사 항목(항원관호르몬(AMH) 검사, 정액 검사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임력 보존 지원 및 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개인의 생식 선택권을 보호하고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장기적인 조직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관련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인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프로그램을 확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1조의 7 2.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규정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성인 국가 예방접종 확대를 통한 예방 중심 보건의료체계 전환

이슈요약
고령화 심화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 의료체계는 여전히 치료 중심으로 운영되어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기업의 인력 운영과 생산성 측면에서도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성인 예방접종 정책은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러 있으며, 주요 예방접종이 개인의 비용 부담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필수적인 예방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비 비중이 지속 확대되면서, 질병 발생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접근성 부족은 고령자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경제활동 참여 및 일·가정 양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임직원 건강관리 차원의 예방접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가족친화미래 포럼은 성인 예방접종 확대와 예방 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하고 예방접종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고령층의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보건·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기업과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포진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와 같이 고령층에서 질병 부담이 높은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접근성을 높이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개인 간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를 합리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 도입 및 확대 과정에서 노동 참여 유지, 결근 감소 등 사회·경제적 효과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예방접종 지원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고, 기업과 가정 전반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제 혜택 및 인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주도의 예방접종 지원 프로그램 확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가족친화 정책 활성화 위한 실효적 인센티브 체계 강화

이슈요약
정부는 가족친화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인증제도, 우수기업 선정,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부처 및 제도 간 분산된 운영 구조로 인해 기업이 적용 대상과 활용 경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인센티브의 수준과 범위는 기업의 투자 및 인력 운영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건의사항
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가족친화미래 포럼은 가족친화 정책을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강화하여 기업 참여를 확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부처 및 제도 간 분산된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고 정책 간 연계성과 일관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적용 대상과 활용 경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 정부 지원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여 인센티브의 활용성과 정책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인센티브의 적용 범위와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기대 효과를 보다 명확히 예측하고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투자 및 인력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센티브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가족친화 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9조 등(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조항)
관련부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 가족친화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강선영
매니저
패션 및 유통 위원회

패션 및 유통

패션 및 유통 산업은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 제품 안전 및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라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정보의 디지털화, 안전기준, 통관 절차 및 인증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패션 및 유통 위원회는 회원사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애로사항을 정부와 공유하고, 소비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이번 백서는 글로벌 규제 동향과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품 표시, 안전 인증, 원산지 표시, 통관 절차 및 디지털 정보 제공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앞으로도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규제 환경 조성과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 시장의 경쟁력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6

총 주요이슈

1. 생활용품 정보 표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QR코드 활용 항목 확대 및 제도 개선

이슈요약

글로벌 시장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성 요구 확대에 따라 QR코드 등 디지털 방식을 활용한 제품 정보 제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을 통해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품 관련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제품의 원산지, 소재 정보, 취급상 주의사항,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등을 QR코드 같은 디지털 수단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에서도 관련 제도 도입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표시제도는 여전히 물리적 표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QR코드를 활용한 정보 제공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특히 섬유제품 및 생활용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정보 제공 방식의 활용이 제한되어 있어 글로벌 규제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제도가 국제적인 디지털 기반 제품 정보 체계와 상이하게 운영될 경우 기업은 국가별로 별도의 표시 체계를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확대될 글로벌 디지털 기반 제품 정보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국제 규제 동향을 반영한 표시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패션 및 유통 위원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섬유제품(의류·신발 등)에 대해 소비자 안전과 직접 관련된 필수 정보는 현행 표시 방식을 유지하되, 취급상 주의사항 및 제품 관련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등 글로벌 디지털 기반 제품 정보 제공 체계 및 주요 교역국의 제도 운영 방향을 고려하여 QR코드 활용 기준 및 범위를 마련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디지털 기반 정보 표시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부처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2. 신발류 제품의 중요 정보 표기 방식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요청

이슈요약
2022년 11월 개정된 가정용 섬유제품 표시 기준에 따라 신발류 제품에도 겔감 재질, 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등의 중요정보를 개별 제품에 박음질하거나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것을 권장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보다 명확히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신발류 제품은 의류와 달리 제품의 형태, 소재, 구조가 매우 다양하며, 제품 내부 공간이 협소하거나 곡면·접착 구조 등으로 인해 정보를 박음질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부 수입 완제품의 경우 한국 시장만을 위한 별도 생산공정이나 후가공 공정을 운영하기 어렵고, 완제품 상태에서 추가 박음질을 진행할 경우 제품 손상, 품질 저하, 착용감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계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신발류 제품의 구조적 특성과 글로벌 생산·공급 현실을 고려할 때 해당 권고사항이 향후 일률적인 의무사항으로 확대될 경우 실무상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공정비, 인건비 및 품질관리 비용이 증가할 경우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는 유지하되, 신발류 제품의 특성과 실제 이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패션 및 유통 위원회는 신발류 제품의 중요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신발류 제품은 제품별 구조, 소재 및 생산·유통 환경이 다양하여 해당 권고사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모든 제품에 동일한 표시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의 "주 1. 겔감 재질, 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등 신발류 제품의 중요정보는 6.1.1에 명시된 방법으로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조항의 삭제 또는 적용 범위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권고사항이 향후 의무사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발류 제품의 특성과 업계 현실을 고려한 제도 운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관련부처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3. 수입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위한 소매용 포장 원산지 표시 개선

이슈요약

관계청 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3에서는 물품별 세부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품(HS 3304), 향수(HS 3303) 등 일부 품목은 소매용 최소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반면, 거울(HS 7009), 브러시(HS 9603), 속눈썹 뷰러(HS 8203) 등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 브러시, 속눈썹 뷰러 등의 품목은 소비자가 구매 시점에 주로 소매용 포장에 표시된 원산지 정보를 통해 제품을 선택하고 있으며, 사용 과정에서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 정보의 활용도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당 품목들은 제품 특성상 현품에 별도의 원산지 표시를 부착하거나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통관 전 포장을 개봉하여 표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제품 손상, 인건비 증가 및 통관 지연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EU,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유사 품목에 대해 소매용 포장상의 원산지 표시를 인정하고 있어, 국내 제도와와의 차이로 인한 기업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법령상 기준과 품목별 세부 운영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분야인 만큼, 소비자 보호 목적은 유지하면서도 제품 특성, 소비자 구매 행태 및 실제 유통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표시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부처 간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패션 및 유통 위원회는 거울(HS 7009), 브러시(HS 9603), 속눈썹 Bürste(HS 8203) 등 소비자가 구매 시점에 소매용 포장을 통해 원산지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소매용 최소 포장에 대한 원산지 표시만으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표시기준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제도는 제도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령 체계와 품목별 세부 표시 방법을 규정하는 운영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분야인 만큼, 관련 제도 간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제 유통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추진될 경우, 실제 제도의 적용을 받는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의 소통 및 의견 수렴 기회를 함께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련부처	산업통상부,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4. 가죽제품 표시 기준의 유연성 제고 및 개선
- 이슈요약**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은 제품 추적을 위해 가죽제품에 '제조연월' 표시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죽제품은 대부분 해외 제조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국내에 수입되며, 제품 단종 주기가 짧고 모델이 다양해 제조연월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입업체는 제조사와의 언어·시차 등의 장벽으로 인해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물류적 부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죽제품은 화장품과 같이 동일 생산 시점의 제품을 일괄 관리하는 배치(batch) 개념이 적용되기 어려운 품목으로, 제품별 제조연월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제품별 시리얼번호, 수입연월, 최초 판매 시점 등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는 이미 관리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제품 추적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정용 섬유제품, 선글라스 등 유사 품목은 복수의 표시 항목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나, 가죽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연월만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유연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품 추적이라는 제도의 목적은 유지하면서도 실제 제품 특성과 유통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표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의사항

가죽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연월 외에 수입연월, 최초 판매 시점, 시리얼번호 등 제품 추적이 가능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품 추적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제품 특성 및 실제 관리 방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죽제품에 대한 표시기준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용 섬유제품 및 선글라스 등 유사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표시 항목 중 선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가죽제품)
관련부처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제품안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5. 수입 신발제품 통관 절차 효율화 및 위험도 기반 검사체계 개선
- 이슈요약**
국내 수입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다양한 신발제품을 수입·유통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 통관은 부산세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세관은 수입신고 물품에 대한 검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 가능성, 품목분류 적정성, 원산지 표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및 통관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발류 제품의 경우 비교적 빈번한 물품검사로 인해 검사 일정 조율, 컨테이너 이동, 개장 및 재포장 등의 절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패션 제품은 시즌성과 적기 공급이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통관 지연이 발생할 경우 판매 일정 및 물류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컨테이너 이동비, 상하차 비용 및 추가 인력 투입 등 물류·운영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간 성실하게 수입신고를 수행하고 「관세법」 준수 이력을 유지해 온 기업의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어 자율준수 기반의 통관 행정 취지와와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위험도를 기반으로 한 선별검사 체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관세법」 준수 이력, 과거 위반 여부, 동일 품목의 반복 수입 여부 및 공급망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실 수입기업에 대한 검사 비율 완화 및

서류심사 중심 운영 확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 거래, 위반 이력, 원산지 위험도,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검사 대상을 선별하는 위험도 기반(risk-based) 검사체계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간 동일 조건으로 안정적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 간소화, 검사 주기 완화 또는 패스트트랙 운영 등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기업과 세관 간 정기적인 소통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한 협의 채널을 확대하여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련부처	관세청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6.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확인 시험결과 상호인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이슈요약
현행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인정되는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은 국내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해외에서 이미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도 국내 시험기관을 통한 추가 시험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중복 시험에 따른 시간적·행정적 부담과 추가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 제7항은 국내외 시험·검사기관 간 제품안전확인 시험·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관련 요건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의 활용 사례를 확인하기 어렵고, 계약 체결 절차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 공인 시험기관이 한국의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더라도 해당 결과의 활용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은 여전히 국내 시험기관을 통한 추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시험·검사 결과 상호인정 제도가 기업의 불필요한 중복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교역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건의사항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허용된 시험·검사 결과 상호인정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시험·검사기관 간 협력 현황 및 제도 운영 현황을 점

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외 공인 시험기관이 한국의 안전기준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와 활용 가능성과 적용 절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시고, 관련 정보를 산업계 및 시험기관에 투명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검사 결과 상호인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내외 시험기관 간 협력을 지원하고, 제도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산업계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관련부처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식품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식품 위원회는 규제 투명성 제고와 이해관계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백서에 제시된 일부 건의사항에 대해 수용 또는 부분 수용으로 회신하였으며, 특히 해외 제조업소 현지 실사와 관련된 영문 정보 제공 확대와 정부 당국과 산업계 간 소통 채널 강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규정의 준수를 위해 해외 제조업체 및 글로벌 본사와의 원활한 협업에 필수적인 상세하고 실질적인 영문 가이드라인의 전반적인 제공 수준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2026년 백서에서는 식품 위원회가 2025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시했던 내용과 유사한 성격의 권고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포장 및 재활용 관련 규정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영문 자료가 부족한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제조업체의 한국 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어렵게 하고, 행정절차의 중복 및 사후 개선 조치 발생 등 업무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향후 이러한 한계를 개선할 경우 해외 기업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본사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한편, 수입식품 산업 전반의 규제 준수 수준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이슈요약
위생증명서
전자문서화 건의
EU에서 수출되는 축산물가공품(멸균식육, 알, 유가공품), 동물성 식품(식육, 알함유가공품)의 위생증명서는 2026년 3월 1일부터 각 수출국별 협의 서식 대신 EU 조화증명서를 한국의 두 정부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EU 수출국에서는 TRACES라는 통합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EU 조화증명서 양식으로 증명서를 통합 발급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전자위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연내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하는 위생증명서는 아직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동일한 서류를 한 부는 온라인으로, 다른 한 부는 종이 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조화증명서에는 해당 식품의 열처리 증명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제품에 원료로 쓰인 지정검역물(예: 아이스크림 원료로 쓰인 난황)

에 대한 열처리증명서는 여전히 각 수출국의 별도 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U 조화증명서로 서식이 통합되었지만 TRACES 시스템에서 발급되지 않는 별도의 서류를 각 수출국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식품 위원회는 위생증명서를 제출하는 두 기관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로 인해 수출국 및 수입국 정부 행정 간소화, 기업 업무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 문서 관리 용이 및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마련 시 제출 서류의 간소화 논의가 필요합니다. 완제품에 원료로 쓰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열처리증명서의 통합 양식이 마련되거나, 현재 EU 조화증명서 안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관련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관련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이슈요약
포장재질·구조
평가제도 영문 제공
요청
포장재질·구조 평가제도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인지하고 있고, 수입식품 업체에서도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해당 규정의 영문 번역 자료 부족으로 해외 제조사와의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법령과 달리 실제 평가 기준이 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및 세부 운영 기준은 대부분 국문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해외 본사 및 제조사에서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품 설계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하고, 사전 대응보다는 출시 이후 수정이 요구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식품 위원회는 포장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실효성과 글로벌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및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한 공식 영문 번역 제공을 확대하고, 재질 및 구조별 평가 사례와 해석 가이드를 포함한 실무 중심의 영문 자료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를 통해 해외 제조사와의 협업이 원활해지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규제를 반영해 불필요한 수정 및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규정	1.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2.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포장 공간비율 가이드라인 영문 제공 요청

이슈요약
수입식품도 국내 제품과 동일하게 포장 공간비율 규정이 적용되나, 포장 설계를 해외 본사 또는 제조사가 주도하고 있어 국내 수입사는 포장 구조 및 크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 제조사의 경우 한국의 공간비율 규정과 같은 정량적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내부 트레이·칸막이와 같은 구조적 요소가 공간으로 산정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낮습니다. 특히 세트 제품 및 시즌 상품(예: 애드벤트 캘린더 (Advent Calendar)의 경우 내부 공간이 많아 규정 초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적용 기준이나 사전 검증 절차가 없어 출시 이후 검사 또는 유통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식품 위원회는 해외 제조사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포장 공간비율에 대한 영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후 수정 및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박안숙
상무
헬스케어 위원회

헬스케어

한국은 혁신, 환자 접근성, 보건의료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헬스를 국가적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약가 개편과 신속 등재 등 최근 정책은 혁신과 효율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혁신 제품에 대한 접근성은 주요국 대비 느리고, 현 제도는 글로벌 혁신 반영과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급여 기준은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기준에 기반하여 마련되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은 환자의 치료 접근을 제한하고 의료 수요와 최적의 임상 결과 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정적 고려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임상 근거 및 과학적 타당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근거 기반 기준으로의 전환은 환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한국 보건의료 및 급여 제도에 기여할 것입니다.

6
총 주요이슈

한-EU 협력 강화는 상호 윈윈의 기회를 제공하며 유럽 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한국의 글로벌 바이오파마 허브 도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정합성 제고와 한-EU FTA 활용을 통해 혁신 가속화, 환자 성과 개선, 공급 안정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의약품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 개선

이슈요약
경제성평가 제도는 국내에서 2006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효과가 우월한 약제의 경우 비교약제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당시 설정된 1GDP 수준의 비용효과성 임계치(ICER/QALY threshold)는 큰 변화 없이 현재도 대부분의 약제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환율과 GDP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보건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비교약제의 약가가 53.55%에서 45%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므로 향후에는 비교약제의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신약의 경우 더욱 비용효과성 입증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평가 지침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 개정이 이루어져(2021년), 해외 HTA 국가와 비교할 때 할인율이나 분석 기간, 외삽추정 방식 등도 보수적이고,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채택하고 있어 삶의 질이 중요한 약제의 환자 편익과 간접비가 모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적응증 약제의 경우 급여확대시마다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기만 함으로써 다양한 임상시험을 통해 그 가치를 입증한 혁신적 신약들이 환자에게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행 위험분담계약(RSA) 제도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행정적 및 참여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법정 부가가치세율 10%를 초과하는 부가가치세(VAT) 부담을 추가로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RSA 제도 개정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제품을 유연가격계약(Flexible Pricing Contract)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RSA 대상 제품들은 대체 치료제가 없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RSA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행정적 또는 재정적 부담 없이 유연가격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러한 생명을 구하는 치료제의 공정한 가치 인정과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건의사항

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헬스케어 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 예정인 '신약 등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합리적 비용효과성 평가 기준 마련 연구'에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경제성평가 지침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할인율, 분석기간 및 사회적 비용(간병비, 돌봄 부담, 생산성 손실 비용 등)의 인정 범위를 업데이트하고, 비교약제의 가격 기준은 최초 등재가 또는 동일 성분 최고가를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실무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약물경제성 가이드라인의 주요 평가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게 개선하고, 보다 유연하고 투명한 비용효과성 임계값 체계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및 질병 중증도를 반영하여 혁신적 치료법의 가치를 보다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비교약물 가격 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인하되거나 조정된 가격 수준에만 의존하지 않고, 최초 등재가격이나 동일 성분군 내 최고가 제품과 같은 보다 적절한 기준점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급여 확대와 연계한 적응증 기반 가격제도의 구체적 이행을 건의합니다. 각 적응증별 비교약물의 가중평균 가격을 반영하는 포괄적 평가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단순히 검토 중인 추가 적응증만이 아니라, 혁신의약품의 전체 적응증 포트폴리오에 걸친 총체적 치료 가치와 임상적 기여도를 포괄하는 평가여야 합니다.

위험분담계약(RSA) 제품의 환급 메커니즘을 실거래가 기반 청구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환자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위험분담계약(RSA) 하에 있는 제품들이 추가적인 불이익 없이 유연가격계약(Flexible Pricing Contract)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경로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치료제에 대한 공정한 가치 인정과 지속적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

1.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요양급여대상 선별기준)
2.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
3. 의약품경제성평가지침
4. 공단협상지침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2.

신속한 혁신 신약의 급여 등재 및 확대를 통한 환자 접근성 개선

이슈요약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26일 건강정책심사위원회를 통해 희귀난치질환 대상 '100일 신속 등재 방안'과 신속 등재 후 조정평가 제도 도입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제도는 급여기준 중심 평가 후 사후 재평가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이 모든 심의 절차를 유지함에 따라 등재 기간 단축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현재 신약 등재는 경제성평가 및 약가 협상 중심으로 운영되며, 가중평균가 방식 적용 약제가 전체 등재 건수 중 60% 이상을 차지함에도 해당 검토에 대한 별도 간소화 경로가 없습니다.

국내 신약 등재 비율은 주요국 대비 낮습니다(한국 22%, 독일 61%, 일본 48%). 신약 최초 출시 후 급여까지 평균 46개월이 소요되어 미국(4개월), 독일(11개월), 일본(17개월) 대비 현저히 긴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중증 및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이 제한됩니다. 또한 등재 지연은 기업의 국내 출시 지연과 투자 위축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신속 등재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 범위와 절차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낮습니다. 재평가 시점, 평가 기준, 사후관리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반복적 재평가 및 과도한 관리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의 환자 수 제한과 질환 특성, 장기적 치료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제도 취지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여 확대의 경우 기존 등재 약제의 신규 적응증에 대해 선입선출 방식으로 검토를 진행하나, 별도 검토 일정과 처리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 등재 대비

낮은 우선순위와 심사 인력 제약으로 검토 기간이 장기화됩니다. 이에 따라 임상적 가치가 확인된 적응증임에도 환자의 치료 접근이 지연됩니다.

주요국은 신속 진입과 사후관리의 분리, 적응증 확대에 대한 별도 경로, 절차별 처리 기한 명시 등을 통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허가 즉시 급여 진입을 허용하고 이후 초기 평가 결과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체계를 운영합니다. 영국은 조건부 급여 및 관리형 접근 계약을 통해 초기 접근성과 사후 근거 축적을 병행합니다. 캐나다는 2025년부터 비교약제 기반 투약비용 평가 약제를 대상으로 별도 평가 트랙을 운영하며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질환 특성 반영 평가 기준, 평가 트랙의 차별화, 등재 및 급여 확대 절차 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헬스케어 위원회는 신약에 대해 100일 이내 등재가 가능한 신속 등재 제도와 선등재 후평가 트랙 도입을 건의합니다.

희귀질환 신속 등재 제도는 환자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곧 제도 시행 예정이나, 대상 범위 및 적용 기준 명확화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긴밀한 논의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행 경평생략 제도와와의 관계 설정 및 제도의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며, 단순히 사후관리 강화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합리적인 대상 범위 설정과 가격 설정 및 실행 가능한 사후 평가체계를 균형 있게 설계함으로써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신속한 환자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건의합니다.

대상 선정 기준은 질환의 형식적 분류가 아닌 임상적 긴급성 및 대체 치료제 유무를 중심으로 설정하여 희귀암을 포함한 희귀의약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제도와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희귀질환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존 경평생략 제도 선정 기준인 질환 중증도 및 재정 영향 등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평가 기준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중평균가 적용이 가능한 약제 등 비용효과성 평가를 상대적으로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약제와 혁신 신약 역시 신속 등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후 평가가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및 검토 지연의 원인이 되거나, 약가 인하 수단으로 과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운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연계 가능성을 평가하여 허가 단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위생성 관리 계획(RMP) 등 자료를 활용하거나, 글로벌 추가 RWE 및 임상 자료 생성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등 반복적인 자료 제출 요구는 최소화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 생존율뿐만 아니라 질병 진행 지연, 기능 유지, 삶의 질 개선 등 환자 중심의 임상지표를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검토 난이도 및 재정 영향 수준에 따라 등재 절차를 구분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가중평균가 수용 등으로 재정 영향이 제한적인 약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속 검토 트랙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약제는 우선 급여 등재를 허용한 이후 예상 사용량을 기반으로 한 사후 협상을 진행하는 구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심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지며, 전체 등재 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급여 확대 약제에 대한 신속 검토 절차 마련과 심사 환경 개선을 건의합니다. 재정 영향과 검토 난이도를 기준으로 급여 확대 대상 약제를 사전에 분류하고, 신속 검토 대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급여 확대 안전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 기준을 설정하고, 검토 일정 및 처리 기한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급여 확대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전담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심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 의료진, 요양기관이 치료 시점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규정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및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3.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 3(처리기간의 계산 등), 제5조(요양급여대상 선별기준), 제6조의 2(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 및 별첨 2. 경제성평가 지침
4.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
5. 약가협상지침
6.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6조 제4항
7.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9. 의약품 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별표 4, 별표 5, 별표 6
10.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 2-라(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5조 규제 협력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신약등재부/약제평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 신약관리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3. 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한-EU GMP 및 자국 내 출하시험의 상호인정 제안 및 필수약품의 약가 사후관리 제도

이슈요약
한-EU FTA에 따라 의약품 규제 협력과 상호 신뢰 기반 제도 운영이 약속되었음에도 현재 GMP 평가 및 자국 내 출하시험 분야에서는 상호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 제조소에 대한 중복 평가와 시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U 및 한국은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이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H) 회원국으로 전반적인 규제관리 시스템이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복적인 규제 절차는 글로벌 규제 조화라는 FTA 체결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중복은 비용 증가와 공급 일정 지연을 초래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과 EU 간 GMP 상호인정(MRA) 체계 구축과 출하시험 결과의 상호 활용을 통해 규제 효율성과 공급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계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시 의약품 규제 협력과 관련한 우선 과제는 GMP 상호인정 체계 구축이며, 자국 내 출하시험 관련 사항 또한 궁극적으로는 해당 MRA 범주 내에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국내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중복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운영은 기업의 중장기 공급 및 투자 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며, 이는 혁신 의약품의 도입 지연 및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필수약품의 경우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원가 및 공급 책임을 반영한 적정 약가 보상이 필수적이나,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보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제도는 중복적이고 예측 불가능하여 혁신 신약 및 신규 적응증의 보험급여 등재 지연,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 '코리아 패싱' 등 혁신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계획 수립과 장기적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필수약품으로 단독 등재된 품목의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등 약가 사후관리로 인해 안정적 공급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큼니다.

따라서 안정적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예측 가능한 약가 사후관리 체계 확립과 함께, 필수약품에 대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약가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헬스케어 위원회는 한-EU FTA 부속서 2-라 제5조(규제 협력) 등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한국과 EU 간 완전한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자국 내 출하시험과 관련된 사항이 EU-Korea GMP MRA 논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건의합니다. EU 기준에 따라 수행된 품질시험 결과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필수약품 중 단독 등재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적용을 면제하고, 원가 및 공급 책임을 반영한 적정 약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 여건을 확보하고, 환자들이 필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1.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 2-라 제2조(혁신에의 접근), 제3조(투명성), 제5조(규제 협력) 등
관련부처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건의사항 조치현황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신규

4. 임상·비임상 자료 인정 범위 개선

이슈요약
임상 1상은 영문 자료 인정이 확대되었으나 2·3상에서는 여전히 국문의 물리화학적, 제조, 품질관리(CMC,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 자료 제출이 요구되어 개발 단계가 진전될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일정 지연 및 해석 불일치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또한 GLP(비임상시험관리기준, Good Laboratory Practice) 자료 요구가 국제 기준 대비 과도해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IND(Investigational New Drug, 임상시험계획승인) 준비 및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헬스케어 위원회는 임상시험 전 단계에 영문 자료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국문 CMC 자료 제출을 면제하여 IMPD (Investigational Medicinal Product Dossier, 임상시험용 의약품 문서)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또한 GLP 자료는 준수 여부 중심의 리스크 기반 평가로 전환하여 IND 단계의 과도한 자료 요구를 최소화하고, 실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및 중복 제출·실사를 지양해야 합니다.

아울러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일부 요건 미흡 시에도 전체 데이터를 고려한 조건부·단계적 승인 및 사전 소통 채널 마련이 필요합니다.

관련규정	1. 약사법
관련부처	2. 의약품 임상기준 관리기준
건의사항 조치현황	3.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4. 비임상시험 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규

5. 특수의료장비의 성능·연식 기반 수가 차등화 확대

이슈요약
 현재 행위별 수가체계는 의료기기의 성능뿐 아니라 연식, 임상적 우수성, 혁신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어 최신 장비 도입에 따른 경제성이 낮아지고 의료기관의 투자 유인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 수가 적용과 영상의학과 상대가치점수 삭감으로 PCCT(Photon-counting CT, 광자계수컴퓨터단층촬영)과 같은 혁신적인 영상진단 기술의 국내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환자의 정밀진단 및 치료 기회가 제한되어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헬스케어 위원회는 CT·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성능, 연식 및 임상적 우수성을 반영한 수가 차등제를 도입하고, CT의 경우 장비 등급에 따른 차등 수가를 적용하여 혁신 의료장비 투자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1. 의료법 제38조 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관련 고시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의료자원정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6.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 가치평가 인정 및 확대

이슈요약
 현재 제도하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의 등재 절차는 제품(의료기기) 인허가 – 기존 기술 여부 확인 – 신의료기술평가 – 행위 평가의 단계적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제도의 복잡성 외에도 소요 기간이 길다는 점, 행위 등재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점, 비급여 영역에서 규제 없이 사용된다는 점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모든 기술에 동일한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기술 간 가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임상적 유용성이 낮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기술에 대한 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 결과, 의료기술의 실제

가치가 보상체계에 정교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외진단검사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임상적 유효성뿐 아니라,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및 건강 결과 개선에 대한 입증된 근거를 요구받는 등 높은 수준의 임상적, 경제성 입증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별도 보상되는 치료재료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 및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해 '가치평가' 트랙을 통해 기존 대비 높은 보상 수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행위료에 포함되다는 이유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인정받더라도 기존 행위 대비 추가적인 가치 보상이 가능한 경로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디지털 및 AI 기반 의료기술의 경우에는 행위평가 과정에서 별도 심사체계를 통해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군 간에도 보상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 '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방안 위탁연구'에서 제안한 '기술 특성에 따른 차등 경로'에도 체외진단검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헬스케어 위원회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완료한 체외진단검사에 대해 행위평가 단계에서 '가치평가' 기반의 별도 평가 트랙을 도입하여, 근거 창출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 제1항 2. 의료법 제 53조~55조 3.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4.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 제2항 제3호 [별표 1]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등재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인사 및 준법

한국의 노동 환경은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영 기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들은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 속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경영 운영을 유지하며, 변화하는 정책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인사 및 준법 포럼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유럽 기업들의 경험과 국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규제의 명확성 확보, 정책 집행의 일관성 제고, 행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그리고 근로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제도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이 글로벌 투자처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제도 전환 기간을 바탕으로 노동 관련 정책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정부 간 신뢰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백서에 담긴 제언은 유럽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 환경 전반의 역동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1 총 주요이슈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 및 고용 기준의 구체화

이슈요약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법의 취지와 노동-경영 관계의 균형을 중시하는 정부의 의도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 '사용자'의 정의가 전통적인 법 원칙을 넘어 확장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 물류, 보관 등 상업적 공급망 관계가 고용 관계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현행 규제 환경 역시 예측하지 못한 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아울러 단일 기업 내에서 교섭창구가 과도하게 많아지고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교섭 과정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파업 중 대체인력 사용,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이 불명확한 점은 노동-경영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계속해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넘어 한국의 규제 예측 가능성 부족 역시 글로벌 기업에 큰 우려 요인입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기업 운영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다국적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직원의 고의적 비위, 지속적인 저성과,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 등을 한 직원을 처리하는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아 정규직 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간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정책 운영과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의사항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인사 및 준법 포럼은 우선적으로 노란봉투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 개념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해석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 형사처벌이 적용되기 이전에 충분한 수준의 집행 지침이 제시되어야 하며,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새로운 법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의 형사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정부는 공급망 계약과 고용 관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기업들이 불필요한 법적 책임 공방에 직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섭단위의 과도한 분절화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섭구조의 합리적 정비도 필요하며, 이는 효율적이고 일관된 교섭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장 점거, 대체근로,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규정의 불명확성은 보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광범위한 정책 방향 측면에서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인사 및 준법 포럼은 주요 규제 변경 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을 제언합니다. 직원 비위나 성과 문제를 처리하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외국 기업 간 정례적인 공공-민간 협의체를 제도화하여 분기 단위의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정책의 원활한 실행을 돕고,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보험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보험 위원회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 보험사들의 공동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업계와 정부 간 건설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의 규제 혁신 노력을 지지하며, 정부가 소비자를 적절히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회사들이 우수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균형 잡힌 규제환경이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 규제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시장 환경과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행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규제 준수 비용이나 과도한 자본 부담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감독체계, 공백 없는 조직구조 유지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규제 효율성과 시장안정성을 증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시장 참여자가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예외와 유연성을 통해 보험상품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보험 위원회는 올해 백서를 통해 이러한 원칙에 기반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상품 고객들과 보험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보다 경쟁력 있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험시장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3 총 주요이슈

1. 독립적·중립적 의료자문기구 설립 및 운영

이슈요약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2020년 보험업 감독규정 등에 의료자문 관련 규정이 처음으로 신설되고, 2021년 8월에는 의료자문 내부통제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자문 절차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중개업체를 통한 의료자문 결과 조작 의혹 등 관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올해 5월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료자문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3의료자문 건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의 의료자문은 여전히 보험사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보험사 개별 계약에 기반한 의료자문 운영으로 인해 VOC 및 민원 증가 등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3의료자문 추가 시행, 소송 진행, 처리 기간 지연 등 다양한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보험 위원회는 의료자문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립적·공적 의료자문기구 설립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의료자문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며,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규정	1.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 의무의 중요사항 등) 제3호 보험금 심사지급단계 2.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 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 의무) 제11항 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 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 의무 등) 제5항 및 별표 1의 1(보험영업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항목별 산출기준) 4. 의료자문내부통제기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금융감독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조직형·의료기관 연계 사기 적발을 위한 실질적 데이터 접근권 확대

이슈요약
개정된 「보험사기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금융 당국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현황과 요양급여 심사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보험사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의 실무 관점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병목현상이 존재합니다. 개별 건에 대한 수사 의뢰나 혐의 입증 단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가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보건 당국의 비급여 의료 데이터 공유 역시 소극적 행정에 머물러 있어 조직화된 의료 연계 시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보험 위원회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보험사에 비급여 의료 데이터 및 자동차보험 과다청구 의심 기관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유럽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른 철저한 비식별화를 전제로, 보험사기 예방 목적의 통계 및 데이터 공유가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시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의료기관 주도형 자동차보험 사기'를 실효성 있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과다청구 빈발 의료기관 리스트, 불법 브로커 연루 의심 데이터 등 핵심 리스크 정보를 민간 손해보험사 SIU 조직에 선제적·정기적으로 피드백해 주는 상시 공유 제도 신설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7조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5조의 2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 4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규

3. 이슈요약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한 보험 지급여력 규제 조정

2026년 초, 기존 K-ICS 지급여력비율 규제에 더해 2027년부터 적용되는 기본자본비율 최소 요건의 세부 산출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보험 위원회는 이번 새로운 지급여력 규제가 이미 보험 시장에 잘 정착된 대형 보험사에 유리한 편향을 초래하고, 중소형 보험사 및 잠재적 신규 진입자에게 과도한 자본 부담을 부과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 중형 보험사의 사례를 반영한 가상의 A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사는 대형 글로벌 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최근 장기보험 시장에 진입하여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K-ICS 기준에 따라 산출된 A사의 요구자본은 200으로 가정됩니다. 이 요구자본을 충족하기 위해 납입자본금은 300, 이익잉여금은 100 수준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A사는 200%의 매우 안정적인 K-ICS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A사는 장기보험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만큼 해지환급금 준비금 적립 필요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포트폴리오 구축 단계(15년 이상 지속될 수 있음) 동안 이익잉여금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400으로 가정할 경우, 기존 이익잉여금 100과의 격차는 300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A사의 기본자본은 가용자본 400에서 해지환급금 준비금 부족액 300을 차감한 100으로 산정됩니다. 요구자본은 여전히 200으로 유지되며, 이에 따라 A사는 새로운 기본자본비율 최소 요건인 50%를 충족하게 됩니다. 이제 A사가 어떤 이유로든 연간 -50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가정해 볼 경우, 가용자본은 350으로 감소하게 되지만, A사는 여전히 175%의 양호한 K-ICS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완자본 관점에서 보면, 영업손실은 이익잉여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새로운 이익잉여금(50)과 필요한 해지환급금 준비금(400) 간 격차는 350으로 확대됩니다. 이 금액을 새로운 가용자본(350)에서 차감하면 A사의 기본자본은 0이 되며, 이에 따라 비율은 50%에서 0%로 급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A사를 지원하는 대형 글로벌 그룹이 요구자본(200)의 최소 50%에 해당하는 100 규모의 자본 확충을 실시해야 하며, 이는 발생한 손실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 단순화된 수치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새로운 규제 메커니즘은 과도한 자본 확충 요구를 초래하고 있습니다(발생한 영업손실의 두 배에 해당하는 자본

요구). 이는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보험 시장의 매력도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으며, 기존 대형 보험사들은 이미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축적하여 해지환급금 준비금 필요를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례에서 설명된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완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장 경쟁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보험 위원회는 새로운 기본자본비율 지급여력 규제를 시행하지 않거나, 최소한 해지환급금 준비금 부족액을 반영하는 부분은 제외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해당 새로운 비율은 지급여력 수단으로서 후순위채 활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해되나, 기존 K-ICS 비율 정의 내에도 이미 후순위채 사용에 대한 제한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성이 낮아 보입니다. 반대로, 해지환급금 준비금 부족액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이미 시장에 자리 잡은 대형 보험사에 유리한 편향을 초래하며, 중소형 보험사나 신규 진입자에게 과도한 자본 장벽을 부과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1. 2027년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로, 기존 K-ICS 비율에 더해 기본자본비율에 대한 새로운 지급여력 규제 추가 2. 보험업감독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금융위원회 보험과, 금융감독원 계리리스크감독국 신규

지식재산권

최근 전자상거래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국경 간 거래 증가에 따라 위조품 유통 방식이 더욱 다양화·고도화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법 집행과 권리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민관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지식재산권 위원회는 유럽 기업과 한국 정부 간 지속적인 소통 창구로서 국경조치, 온라인 플랫폼 책임, 형사처벌, 손해배상제도, 위조품 단속 및 집행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백서는 회원사들의 현장 경험과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하고 균형 있는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회는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혁신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10
총 주요이슈

1.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이슈요약

한국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위반 시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대체로 낮아 법 집행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규모 위조품 유통 사건의 경우 50만~200만 원 수준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동일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도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고 낮은 수준의 벌금만 부과되는 경향이 일반적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과 권리자들 사이에서는 위조 범죄 및 상습범 제재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를 통한 불법적인 이득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양형 기준이 강화되는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 기조가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 패션 아이웨어 브랜드 관련 디자인 침해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시장 질서 보호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는 물론, 권리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에 대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제시한 의견이 2024년 정부 회신을 통해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음이 확인된 바 있으나, 실제 논의 진행 여부 및 향후 검토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지식재산권 위원회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형량 구간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최소 벌금 기준 (minimum fine)을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수준으로 설정하여 소규모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의 상습성 및 반복성을 고려하여 반복적 위반이나 상습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억제력을 확보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는 결코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본 사안과 관련하여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기존에 제출한 의견이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차원의 논의 안건으로 검토될 수 있음이 확인된 바 있는 만큼, 해당 논의의 진행 여부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피드백 제공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1. 상표법 2. 디자인보호법 3. 대법원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기획운영과
	재건의

2.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국경 조치 강화

이슈요약

관세청의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 물품의 국경 단속 실적은 전년 대비 전체 건수에서 19.9%, 수량에서 6.6% 증가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최근 해외 직구 급증 및 온라인 플랫폼 확산 등 급변하는 유통 환경과 침해 물품의 유입 경로 다변화에 대응해 관세청의 단속 역량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반 화물의 경우 2022년 대비 수입검사율이 건수 기준 54%, 수량 기준 79.2% 급감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위조품이 통관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디자인권은 전체 지식재산권 보호 요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단속 및 적발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세관 대상 디자인권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실무적 판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단속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자인권 침해물품에 대해서도 세관 차원의 관심과 보호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증가하는 디자인권 신고 수요가 실효성 있는 단속 및 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체계 보완이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지식재산권 위원회는 전국 주요 항만 및 세관에서 일반 화물 기반 위조품 단속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전담 인력 확충, X-ray 등 판독 설비 현대화, 대량 적발 대응이 가능한 감정장 및 전용 창고 인프라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디자인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의 보호 및 단속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체계 보완 및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증가하는 디자인권 신고 수요가 실질적인 적발 및 단속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권 침해 판단 및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관련규정	1. 관세법 제235조 2. 관세법 시행령 제269조의2 3.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련부처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3. 국제 소량 화물 수입통관 효율성 제고
- 이슈요약**
중국발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확산으로 국제우편물 및 특송 화물을 통한 소량 화물 형태의 위조품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우편물 및 특송 기반 단속 체계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적발 위조품의 상당수가 국제우편물 및 특송 형태로 반입되고 있는 만큼, 소량 화물 전체에 특화된 단속 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등 특정 성수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관련 예산 및 현장 대응 체계도 확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일부 세관에서는 단속 인력 부족, 압수품 보관 공간 부족 등 현장 운영상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집중 단속 역시 품목별·테마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우편물 및 특송화물 전체에 대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지식재산권 위원회는 국제우편물 및 특송을 통한 소량 화물 형태의 위조품 유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속 인력 확충, 압수품 보관 공간 확대 및 세관 검사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급증하는 물동량에 대비하여 관련 인력 및 시설 확충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연 1~2회 시행 중인 국제우편물 및 특송화물 대상 집중 단속을 정례화하고, 위조품 유입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등 성수기 집중 단속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함께, TIPA 협력 기반 현장 대응 체계 및 권리자 협업 프로세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협력 체계 강화와 지원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1. 국제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
관련부처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4.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위조품 유통 방지 제도 마련
- 이슈요약**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위조품의 주요 유통 경로로 자리 잡으면서 온라인 상표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은 자율적으로 삭제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근거와 책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플랫폼별 대응 수준과 실효성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 라이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실시간 및 SNS 기반 플랫폼을 통한 위조품 유통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특성상 판매자의 익명성 보장, 정보 미제공, 신고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상표권자가 침해 게시물에 즉시 대응하거나 판매자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와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협조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상표권자의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상표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며, 지식재산처 역시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해외 입법 사례 및 글로벌 플랫폼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지속적인 논의와 업계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지식재산권 위원회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정의와 책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조품 게시물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과 플랫폼의 협조 의무를 법률 또는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여 실무상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침해 게시물 신고 절차 간소화, 삭제 조치 이행 기한 및 결과 통지 절차, 상표권자의 정보제공 요청 범위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유튜브 라이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실시간 SNS 기반 플랫폼을 통한 위조품 유통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플랫폼 책임 관련 입법 사례 및 글로벌 플랫폼 운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관련 제도 마련 과정에서 상표권자, 플랫폼 사업자 및 법률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 또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정 마련과 현장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관련규정	상표법
관련부처	지식재산처 상표심사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 위조품 유통 근절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슈요약
위조품 유통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위조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험이 확인되는바, 이는 위조품 유통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공공 안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수사는 경찰의 주요 단속 분야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로 인식되어 왔으며, 현장에서는 위조품 단속의 중요성에 비해 수사 인력의 동기부여 및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이 경찰 업무의 주요 테마로 부각되고, 그 실적이 인사평가 체계에 일부 반영되기 시작한 점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이는 위조품 단속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현장 수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더욱 실효성 있는 수사 체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현재 경찰청 내 ‘지식재산 전문 수사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육 및 실무 중심 커리큘럼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수사의 전문성과 지속가능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교육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지식재산권 위원회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 수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사 평가 제도 개선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실적이 경찰 인사평가 체계에 일부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는 위조품 단속의 중요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그러나 현재 반영 수준이 제한적인 만큼,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이 경찰 인사사고 및 조직 평가에 보다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수사 인력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단속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식재산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 및 민관 협력 확대

현재 경찰청 내 지식재산권 전문 수사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문 교육 및 실무 중심 커리큘럼이 부족하여 현장 실무 역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권 침해 수사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을 경찰청 정규 커리큘럼에 신설하여, 전문 수사관들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 민간기관은 교육 설계 및 강사 지원을 통해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으므로, 공공-민간 연계를 통한 실무 기반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식재산 수사 역량 향상을 도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관련규정	1. 화학물질관리법
	2. 상표법
관련부처	경찰청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 위조품 유통 대응 강화를 위한 경찰 내 지역 전담 조직 및 수사 체계 개선

이슈요약
서울 동대문, 부산 국제시장, 대구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은 국내 위조품 오프라인 유통의 주요 거점으로 지속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소비자가 위조품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높은 비율이 전통시장 및 노점 형태의 오프라인 유통 경로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오프라인 위조품 유통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산 국제시장과 대구 서문시장 등 일부 지역에서는 위조품이 여전히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으며, 지역별 단속 관심도 및 대응 수준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시, 중구청, 경찰, 지식재산처 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동대문 일대 단속을 강화하여 위조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 성공적인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지역 기반 협력 체계와 지속적인 관리 및 단속 의지가 위조품 유통 감소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다만, 지역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관할 권한의 한계, 유기적인 협업 구조의 부재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위조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경찰, 유관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과 단속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지식재산권 위원회는 오프라인 위조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역 기반 협력 체계 강화와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위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1. 지역 기반 협력 체계 강화 및 확대

부산 국제시장, 대구 서문시장 등 위조품 유통 밀집 지역에 대해 지자체, 경찰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인 협업 단속 사례와 같이,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협력 기반 관리·단속 체계가 서울 외 위조품 유통 밀집 지역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2. 전통시장 내 위조품 유통 관리 강화 및 정보 공유

위조품 유통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과 노점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관리 활동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별 위조품 유통 현황, 효과적인 대응 사례, 그리고 우수 단속 기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전국적인 위조품 단속 역량을 상향 평준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3.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관 세미나 참여 협력 요청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개최하는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 세미나에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세미나 참여는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최신 위조품 유통 트렌드 및 단속 노하우를 공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조품 유통 근절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련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관련부처	부산광역시 중구청, 대구광역시 중구청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7.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방안

이슈요약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의 재량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며, 이로 인해 배상액의 편차가 크고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1년 한-미 FTA 이행 과정에서 도입된 현행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이후 한 번의 개정을 통해 금액이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대규모·반복적 위조품 유통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과정에서의 증거 수집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K-디스커버리(K-Discovery)’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손해 입증 및 증거 확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손해배상 체계에 대한 논의 역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고의적인 위조 상표 침해에 대해 침해된 상표당(per mark) 및 상품 또는 서비스 유형당(per type of goods or services) 기준으로 법정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역시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각 유형의 위조품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국제적 입법례와의 조화를 고려한 법정손해배상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지식재산권 위원회는 「상표법」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및 적용 범위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K-디스커버리’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증거 수집 제도 개선 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이러한 손해 입증 및 증거 확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체계 논의를 병행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증거 확보의 용이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적절하고 예측가능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식 재산권 침해 방지 및 상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법제 개선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관련부처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산업재산보호정책과,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8. **이슈요약**
 온라인 위조품 사이트 차단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최근 온라인 위조품 유통 채널 중 위조품 판매 단독 사이트(stand-alone counterfeit websites)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2년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65억 원에 달하는 매출이 발생하는 등 위조품 단독 사이트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위조품 판매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이트 차단 심의 구조상 실효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조품 단독 사이트 차단을 위해 요구되는 입증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상표권자가 침해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전체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을 통해 접수된 전문 신고 건들이 일반 민원과 유사한 절차로 처리되면서 심의 지연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는 상표권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한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상표권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행 제도 구조상 사이트 차단 관련 최종 조치 및 심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위조품 단독 사이트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 및 접속 차단 제도가 도입된 선례를 참고하여, 「상표법」 분야에서도 위조품 판매가 명백한 단독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 조항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유사 법령의 성공적인 사례를 적용하여 건강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막대한 규모의 불법 수익이 창출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지식재산권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 지식재산보호원 간 업무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절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간 연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신고 자료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신고 건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가 가능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해외 서버를 통한 우회·재게시 등 온라인 위조품 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차단 체계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이트 차단을 위한 입증 기준 및 증거 해석 기준 역시 급변하는 온라인 위조품 유통 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방송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9. **이슈요약**
 유사 디자인(Dupe) 제품 확산에 따른 법적 대응 기준 마련 및 실무 적용 구체화

최근 '듀프(Dupe)'로 불리는 고가 브랜드 유사 제품이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편집숍,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듀프 제품은 로고나 상표를 직접적으로 모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통적인 의미의 위조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디자인·색상·제품 구성·전체적인 외관 등을 유사하게 구현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고 브랜드 가치 및 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시장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K-뷰티, 패션,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사 디자인 제품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 관련 시장 동향과 산업계 우려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듀프 제품에 대한 침해 판단 기준과 실무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권리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외관 모방' 및 '출처 혼동 유발 행위' 등에 대한 해석 및 적용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현장 수사·행정 집행 및 실무 대응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듀프 제품과 전통적 위조품 간 개념을 구분하면서도, 시장 혼동 및 브랜드 가치 훼손 문제에 대한 제도적 검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지식재산권 위원회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외관 모방' 및 '출처 혼동 유발 행위'와 관련하여 듀프 제품에 적용 가능한 해석 및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 환경과 최근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및 사례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국내외 판례 및 정책 사례 등을 기반으로 관리자와 산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또는 정책 자료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기준 및 정책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전문가·관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부정경쟁행위 정의) 2. 상표법 제110조(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관련부처	지식재산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10. 세관 지식재산권 교육 운영의 예측 가능성 및 적시성 강화

이슈요약

관세청이 주관하는 세관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 교육은 주요 세관 및 지역 세관과 연계하여 연간 약 17~20회 규모로 꾸준히 실시되어 왔습니다. 이 교육은 기업이 세관 공무원 및 현장 검사 인력에게 위조품 식별 방법과 최신 유통 동향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민간 협력 채널로 기능해 왔습니다. 특히 이 교육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X-ray 검사와 실물 확인을 통해 위조품 여부를 판별해야 하는 세관 공무원들의 브랜드 식별 역량과 위조품 판별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책임있는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민관의 직접적인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경 단계에서의 위조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에서도 수사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대외비성 브랜드 정보를 다루는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은 보안 유지를 위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면 교육은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되어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민관의 높은 상호작용 및 즉각적인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여 교육의 집중도와 몰입도를 극대화합니다. 통상적으로 본 교육은 매년 3월 중순경부터 시행되며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으나, 2026년 교육 일정 및 시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지연되면서 명확한 운영 계획이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교육의 효과적인 진행을 저해하여 정보의 적시성을 떨어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위조품 유형 및 유통 경로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통관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 기능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건전한 국가 경제 유지와 선량한 소비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세관 지식재산권 교육의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교육 일정과 시행 시기를 조기에 확정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무 교육이 안정적으로 긴밀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운영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 공백 방지를

위해 연간 교육 시행 횟수와 기본 운영 기간을 정례화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및 위조품 유입 차단 기능 제고를 위해 지역 세관과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기업 영업비밀과 같이 민감한 주제를 포함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위조품 유통 실태를 반영해야 하는 지식재산권 교육의 특성상, 교육의 적시성과 현장 적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오프라인 진행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시차 없는 실시간 질의응답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 사전 녹화 및 배포 방식의 교육은 기업이 안전하게 대외비적 정보를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최신 정보 반영의 한계와 심도 있는 논의의 제약으로 인해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장 실무에 적합한 안전하고 긴밀한 정보 교류를 위해 오프라인 교육 중심의 운영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관련부처	관세청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주방 및 소형가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방 및 소형가전 위원회는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현안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의 건설적인 소통을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장조사용 샘플 제품의 면제 한도 상향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장기적으로 논의의 이어나가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산업계와 정책 당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2026년 건의사항에서 규제의 일관성 제고, 불필요한 준수 부담 완화, 그리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위원회는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규제 장벽을 먼저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고 기업의 규제 준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제품을 더욱 효율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총 주요이슈

1. 위생용품 표시사항
위치 개선
1.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II. 공통표시기준 - 1. 표시 방법 - 가. 소비자에게 판매 · 대여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 · 대여 단위별 용기 · 포장에는 I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이슈요약
- 「위생용품관리법」 개정(2023.6.13.)에 따라 기존 공산품으로 분류되었던 구 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부합하도록 구강관리용품의 개별 표시사항이 신설(2025.6. 시행, 2년 유예)되었고,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만, 제조일자 표시와 관련하여 국내 유사 품목의 소비자 제품 규정에서는 제조일자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서는 제조일자를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 용기·포장에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품 본체에 표시된 사항은 공식적인 표시사항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1. 포장 폐기 후 제품 식별 용이성 제고
- 현행 위생용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대체로 외부 포장을 폐기한 후 제품만 보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 안전 및 정보 제공 측면에서 제품 본체에 제조일자를 표시할 경우, 포장 폐기 이후에도 해당 정보를 확인할

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 [부속서 2]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7. 표시 - 제품 또는 최소 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 제59조(표시방법) - ① - 2. 제57조에 따른 표시는 해당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된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별표 5]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6조 관련) - 1.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 가.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은 자는 영 제77조의 5 제1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수 있어 제품 식별과 추적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는 기존 규정보다 강화된 표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국내 유사 품목 표시 규제와의 조화
- 국내 주요 소비재의 제조일자 표시 관련 규제는 대체로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제조연월일 표시 의무 없음
- 2)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제품 또는 최소 단위 포장²
-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제품 또는 포장³
- 4) 전기용품 전자파 적합성: 제품 또는 포장⁴

이와 같이 타 소비재 규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구강관리용품 또한 제품 본체 표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위생용품의 표시 기준을 유사 품목 소비재에 적용되는 기준과 일치시키는 한편, 소비자가 중요한 제품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방 및 소형가전 위원회는 위생용품 표시사항을 '제품 또는 제품의 최소 판매 단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이를 통해 관련 규제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위생용품 제조사로 하여금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 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규정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구강관리용품
제조기준 개선
- 이슈요약
- 위생용품 중 과일·채소용 세척제의 제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과일·채소용 세척제는 효소 또는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이거나 식품 성분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3) [별표 1]에 기재되지 않은 성분을 세척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 서류나 관련 문헌, 안전성 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 구강관리용품(칫솔(치간칫솔), 치실, 설태제거기)의 제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칫솔(치간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제조·가공 중에 의도적으로 첨가 가능한 원료·성분(첨가제)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이거나 식품 원료·성분으로 인정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과일·채소용 세척제의 경우 허용된 성분이 아니더라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자료 등을 제출하여 검토 받는 경우 허용하는 기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반면,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해당 조건이 없어 사용할 수 있는 첨가제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1. 신규 성분 도입을 위한 절차적 어려움

신규 성분을 제품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분을 위생용품용이 아닌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 원료'로 먼저 등록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큼니다. 섭취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식품 수준의 등록 절차를 적용받는 것은 중소기업에 포함한 관련 업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신제품 개발을 지연시키고 국내 시장의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기준과의 차이에 따른 통상 측면의 제약

EU 및 미국 등 해외 공인 기관(FDA, EFSA, CAC, ECHA 등)에서 안전성이 인정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식품 원료·성분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면 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 기준과의 차이는 우수한 글로벌 제품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수입업체에 실질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 국내 소비자가 다양한 고품질 제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방 및 소형가전 위원회는 구강관리용품의 원료 사용 범위를 타 위생용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 원료가 아니더라도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기준과의 조화를 제고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김경현
매니저
물류 및 운송 위원회

물류 및 운송

지난 한 해 글로벌 물류·해운 산업은 지정학적 긴장, 무역 항로의 변화,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며 최근 수십 년 내 가장 변동성이 큰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은 항만, 해상 운송 네트워크 및 관련 인프라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삼아 국제 물류·해운의 핵심 거점 역할을 재확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해운대리점 등 해상운송 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해운 서비스 전반의 투명성, 개방성 및 예측 가능성은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물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업 환경에서 업계는 일부 운영 관행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절차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해당 서비스 또는 시설이 공공 인프라의 성격을 갖는 경우, 절차의 명확성 제고는 시장 접근성, 고객 선택권 및 공정경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물류 및 운송 위원회의 2026년 건의는 안전과 운영의 무결성을 충분히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분야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를 촉진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해운·물류 서비스 분야에서의 한-EU 협력 심화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표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유럽 기업들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투명성과 비차별 원칙 등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한국은 자국 해상 물류 생태계의 회복력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총 주요이슈

1.
LNG 인수기지
해운대리점 선정
절차의 투명성 및
개방성 제고

이슈요약

「해운법」은 '해운대리점업'을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운송사업자 포함)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 등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상 등록 요건을 갖춘 해운대리점은 원칙적으로 선박 입출항, 항만 이용, 관계기관 신고, 선주·용선자·항만 당국 간 연락 등 선박 운항 관련 업무를 대리·지원할 수 있습니다.

LNG 인수기지와 같이 에너지 공급 안정성, 항만 보안, 위험물 취급 및 터미널 안전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일반적인 해운대리점 등록 외에도 각 인수기지의 출입 승인, 안전·보안 교육, 시스템 접근 권한, 비상대응 절차 숙지 등 별도의

운영상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상 등록 요건과 터미널별 운영·승인 요건이 병존한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절차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일부 LNG 인수기지에서 장기간 특정 대리점을 중심으로 해운대리점 업무가 수행되어 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또는 자격을 갖춘 대리점이 해당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신청·문의하거나 검토받을 수 있는 공개적이고 문서화된 절차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 주체의 의도적 조치로 단정하기보다는 터미널 운영 기준, 수송 계약상 업무 배분, 선주·용선자의 대리점 선임 관행, 수송사 또는 터미널 운영자의 협력업체 관리 방식, 출입·보안·안전 승인 절차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인프라 성격을 갖거나 공공기관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운영되는 인수기지의 경우, 관련 기준이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시장 접근성, 고객 선택권, 운영 투명성 및 공정경쟁 측면에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LNG 인수기지별 해운대리점 선정·승인·변경 절차가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보안·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또는 자격 있는 대리점이 합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LNG 인수기지가 공공 인프라 성격을 갖거나 공공기관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운영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명확히 공개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운영 방식은 시장 접근성, 운영의 투명성, 고객의 선택권 및 공정경쟁 측면에서 우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안은 국내 해운대리점업 등록 요건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해상운송 보조 서비스 분야의 투명성, 비차별성, 공정한 시장 접근이라는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서비스 시장의 일반 원칙이자 한-EU FTA에 반영된 원칙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LNG 인수기지의 해운대리점 선정·승인·변경 절차가 명확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경우, 이는 해상운송 및 해상운송 보조 서비스 분야의 시장접근성,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물류 및 운송 위원회는 관계 당국 및 관련 공공기관이 LNG 인수기지별 해운대리점 선정·승인·변경 관행을 점검하고, 안전과 보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장 접근 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는 안전·보안·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라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 가능성을 검토받을 수 있도록 절차의 존재 여부, 적용 기준, 제한 사유 및 이의제기·문의의 경로를 명확히 하자는 제도 개선 요청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LNG 인수기지별 해운대리점 지정·등록·승인·변경, 출입 승인 및 시스템 접근 절차의 존재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보안상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기본 기준과 절차를 문서화하여 공개
- 특정 단일 대리점 사용이 계약상 의무, 터미널 운영상 요구, 수송사·수송자의 협력업체 선정 관행, 선주·용선계약상 조건 또는 안전·보안상 제한 중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관계 당국 및 관련 기관이 확인·재검토
- 안전·보안·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해운대리점에 대해서는 공개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신규 참여 가능성을 검토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선주, 용선자 또는 수송자가 공개된 기준을 충족하는 대리점을 합리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되, 터미널 안전·보안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 적용 기준 및 검토 절차를 명확히 제시
- 장기간 특정 대리점만 활용되는 경우에도 정기적인 기준 재검토 절차와 문의·이의제기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제고

관련규정	해운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해양산업

한국은 해양산업을 전략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해당 흐름에서 글로벌 투자, 국제 가치사슬, 녹색 전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해양산업 위원회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 규제 명확성 제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를 위해 산업 현안과 주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자금조달 구조와 국내 요구사항이 유럽 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시장의 경쟁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도 백서는 이러한 사항이 공정경쟁, 국제적 전문성 활용, 해외 기업 참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합니다. 규제 명확성과 국제 기준 정합성 강화는 산업 경쟁력과 투자 신뢰를 높이고, 한국의 글로벌 해양·해상 산업 내 위상 제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EU 협력 강화는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한국의 해양·해상 산업 선도국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목표를 지원하는 동시에 유럽 기업이 기술, 안전, 지속가능성 및 글로벌 전문성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총 주요이슈

1. 부유식 해상풍력 –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이후의 기술 기준/규칙, 인증 기관 및 관련 규정의 명시

이슈요약

대한민국 국회는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발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률은 정부의 공식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법체계에 편입된 후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6년 3월 26일부로 주요 시행 규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법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부유식 해상풍력과 관련된 국내 법·제도 체계는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설계 및 건조 단계에 적용되는 실질적인 기술 기준 및 규칙이 아직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한국은 고정식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술 기준을 마련한 상태이나, 부유식 해상풍력에 적용 가능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기준의 도입 및 인정 체계는 충분히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DNV,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 표준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수행, 보험 등 주요 영역에서 사실상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기술적 신뢰성과 사업성 평가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규제 체계는 국내 기준 중심의 검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제 기준은 인정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자는 국내 법·규제 요건 충족을 위한 검증과 프로젝트의 안전성 확보, 품질 확보 및 금융조달 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제 기준 검증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이중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이중 규제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인허가 및 설계 승인 절차 지연 발생
- 개발 및 규제 준수 비용 증가
- 시장에서 기술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확대

그 결과 투자자 신뢰가 저하되고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공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해양산업 위원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기준 및 인증 체계의 활용을 바탕으로, 한국 해상풍력 시장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국제 기준과 정합된 국가 통합 기술 기준체계 구축

한국 정부는 DNV 및 IEC와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상풍력,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 기술 기준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선도 국가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접근 방식으로, 기술적 일관성 확보와 글로벌 시장과의 호환성 제고, 그리고 프로젝트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2.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국제 인증제도 및 기술 기준 도입

부유식 해상풍력 초기 개발 단계에서의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증제도, 기술 기준 및 규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국제 인증기관을 활용할 경우 보다 견고한 기술 검증과 예측 가능한 인허가 절차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글로벌 금융기관 및 보험사의 신뢰 또한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 인증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동등한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는 경우 FOW 프로젝트에 인증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 인증 관행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내 기술 역량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조달 가능성 및 사업 타당성 제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기술 기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기술 요건 충족이 가능해지며, 프로젝트의 품질 및 신뢰성 확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정적 운영, 그리고 국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금융조달 기준 충족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프로젝트의 금융조달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관련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BBCHP) 요건 완화, 안전 인증기관(RO) 제한 해소 및 국가재정지원 제도의 공정경쟁 촉진

이슈요약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해양산업 위원회는 해상 안전을 관리하고 공인기관(Recognised Organisation, RO)을 지정하는 등 국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존중합니다. 다만 현행 체계와 국제 해사 관행 간의 정합성 측면에서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BBCHP)은 특정 국내 목적에 있어 한국 국적선과 유사하게 취급되기도 하나, 법적으로는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각 기국(flag State)의 관할과 책임을 따릅니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원칙에 따르면 RO를 지정하고 승인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기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외국 국적 선박에 대한 기국의 승인 권한과 역할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해양산업 위원회는 RO 지정이 정부의 고유한 정책 수행 수단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선급 서비스는 IMO RO Code 및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IACS) 요구사항과 같은 조화된 국제 기준하에서 경쟁적으로 운영되는 독립 기관에 의해 제공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문제는 RO를 지정할 권한 자체가 아니라, 현재의 제도가 기술적으로 자격을 갖춘 모든 기관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비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BBCHP 요건과 RO 지정 방식, 그리고 금융 조건의 상호작용이 신조선 프로젝트에서 선급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선급(Korean Register, KR)과 프랑스 선급(Bureau Veritas, BV) 외에도 DNV, 미국 선급(American Bureau of Shipping, ABS), 로이드 선급(Lloyd's Register) 등 다른 IACS 회원사들 역시 동등한 기술 수준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적용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특정 선급으로 선택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선주·용선자 및 투자자의 합리적 선택 범위를 축소하고 프로젝트 구조 설계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결과적으로 시장 내 공정경쟁 환경과 효율적 의사결정 측면에서 일정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제 관행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해운 시장에서는 선급 선정이 기국의 요구사항과 상업적 고려사항(특히 용선자의

선호)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주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영역까지 국내 정책적 제약이 확장될 경우, 의도치 않게 상업적 선택을 제한하고 해운 가치사슬 전반의 운영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특정 선급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LNG 프로젝트와 같이 국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경우, 신조선 프로젝트는 국내 규제(BBCHP)와 글로벌 시장 요구(용선자)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이중 선급(dual-class) 구조를 채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현실적인 해결책이지만, 승인 절차의 중복, 행정적 복잡성 증가, 그리고 선주·조선소·기자재 업체의 준수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글로벌 검증 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선급의 역할이 보다 명확하고 중요해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비효율성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해양산업 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이 건설적인 취지에서 제시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강력한 안전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투명성, 국제 정합성,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제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해외 투자자 및 산업계의 신뢰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해양산업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BBCHP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RO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기술적으로 적합한 모든 IACS 회원사가 동등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외국적 BBCHP 선박에 적용되는 법률 및 정책 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제해사협약상 기국의 책임과 국내 규제요건 간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3. BBCHP 구조, RO 지정, 금융 방식 간 상호작용을 재검토하여 상업적 유연성과 운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의도적인 제약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선박안전법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조세

5

총 주요이슈

1. 수입요건 정의 관련 규정 명확화

이슈요약

많은 (기실 대부분의)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은 한국 내 수입 거래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관세법」은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수입자의 수입통관 전 법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226조 제1항, 이하 '수입요건'으로 약칭). 한편, 수입자가 수입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실용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청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2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 및 상기 관세청 고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고시에 포함된 '세관장 확인물품'은 수입요건에 관련한 제한적 열거가 아닙니다. 그 결과, 수입자로서는 항시 수입요건을 인지하지 못한 채 외국물품을 수입할 가능성에 노출될 것입니다. 특히 상기 관세청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수입물품이라면 수입요건 누락 가능성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수입요건을 빠짐없이 유효하게 구비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의 관세 영역으로 수입통관된 물품이 관세청의 관세조사(사후심사), 현장 검사, 기타 세관조사로 적출될 경우 부정수입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위와 같은 가능성은 수입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참고).

수입요건의 의미와 수입자의 수입요건 준수 방안이 법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한, 그동안 애당초 일반적인 사후심사(관세조사) 또는 행정조사로 여겨지던 세관 조사가 관세법칙조사(형사범죄 수사)로 전환되어 수입자에게 형사처벌을 초래하던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세 포럼은 회원사의 세무 및 재무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정기적인 조세 법령 및 정책 동향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 기업들의 경험과 국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매년 백서를 통해 재정경제부(MOFE)와 국제청(NTS)에 정책 개선 방향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 행정의 확실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며, 보다 투자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조세 체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세 포럼은 납세자들이 더욱 높은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수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의 의미를 「관세법」본법이나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관세법 제226조 제1항
관련부처	재정경제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거래순이익률 방법 적용 시 수익률지표 관련 규정 개선

이슈요약

많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은 한국 내 자회사의 이전가격 관리를 위하여 거래순이익률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거래순이익률 방법의 적용 시 사용할 수익률지표에 대해 회계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비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법문상 거래순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며, 영업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전가격 실무 운영 시 회계상 영업 외 항목을 반영하여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 환율의 급변으로 많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은 한국 내 자회사 이익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비용을 이전가격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이전가격 운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Paragraph 2.88)은 예외적으로 영업 외 항목도 고려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EU 국가 간 상호합의 또는 이전가격 사전승인에서도 영업 외 항목을 반영한 법인세 차감 전 이익(Profit Before Tax, PBT) 기준의 수익률지표가 사용되고 있어, 현행 규정과 상충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세 포럼은 거래순이익률 산출 기준을 회계상 영업이익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하여 납세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영업 외 항목도 고려하여 이전가격을 관리하게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관련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관련부처	재정경제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이취요약
이전가액 보고서
적시 보관·비치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이전가액 문서화를 적시에 준비하고 합리적으로 작성한 납세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면제를 허용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추가 세액 산정에 대한 10%의 가산세와 관련이 있으며, '적시'란 법인세 신고 기한을 의미합니다. 납세자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보고 대상(예: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이전가액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세무 조사관이 명시적으로 요구할 때만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문서화가 적시에 준비되었고, 그러한 문서화를 준비하는 데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납세자가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세무조사관이 문서화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재량권이 있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해석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산세 면제 여부의 불확실성은 BEPS 보고서 대상 납세자에게는 덜 혼란스럽습니다. BEPS 보고서는 제출 기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BEPS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납세자가 문서화 의무를 준수하였음을 과세 관청에서 확인할 가능합니다.

건의사항
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세 포럼은 BEPS 보고서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전가액 문서화 제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는 더 많은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적시에 문서화를 준비하도록 장려하고, 세무조사관이 이전가액 검토 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서 BEPS 보고서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국제 거래명세서 등의 이전가액 관련 서식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전가액 보고서 또한 동일 기한 내에 제출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관련부처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4. 이취요약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요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4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및 거래 규모 합계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세 포럼은 단기간 사업을 운영한 회사가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연환산 대상 납세자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며, 가급적 해당 과세연도 동안 충분한 기간 사업을 운영한 납세자로 제한할 것을 건의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한 달간만 영위한 납세자에게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관련부처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5. 이취요약
글로벌최저한세 정보
신고서 제출 관련 세부
지침 요청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연도의 최종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각각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MNE 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GloBE)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MNE 그룹에 속한 국내 구성기업(자회사 및 지점 포함)은 해당 신고기한 내에 국제청에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Global Information Return, GIR)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 모기업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2024년 12월 31일인 경우, 최초 적용 연도의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며, 해당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구성기업은 현재 GIR(제53호 및 제54호 서식) 대신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제55호 서식)를 제출하여 그룹 내 GIR을 제출하는 지정된 국외 소재 구성기업을 통보하는 간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 신고서 제출 방식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1) 같은 MNE 그룹에 속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GIR을 그 소재지국 과세 당국에 제출할 것
- 2) 해당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GIR의 연례 자동정보교환을 규정한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약정(GIR-MCAA)이 발효 중일 것

그러나 현재 GIR 정보 교환의 근거를 제공하는 GIR-MCAA가 적시에 발효될지 여부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2026년 말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이행국들 간 정보교환 관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나, 최초 신고기한인 2026년 6월 30일 이전에는 다수 국가에서 해당 약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에 따른 실무적 어려움을 고려하고, OECD의 'Global

Minimum Tax: Support for Central GloBE Information Return Filing and Exchange (2024 Reporting Fiscal Year)' 문서에 공개된 이행국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과세 당국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정보교환 마감일 (2026.12.31.) 이전에는 국내에서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GIR 신고의무를 강제하지 않을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1) OECD 문서 부속서에 기재된 국가 중 한 국가에서 관련 제출기한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Global Information Return, GIR)가 중앙 제출될 것
- 2) 우리나라에서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될 것

상기와 같은 지침은 유용하나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국내 기업들, 특히 유럽에 본사를 둔 그룹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 관련 국가에서 GIR-MCAA가 언제 발효될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여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정보교환 마감일인 2026년 12월 말 이전에 우리나라와 관련 EU 국가들 간에 GIR-MCAA가 발효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마감일 이후까지 해당 국가에서 그 발효가 지연될 경우 해당 국내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또는 추가적인 GIR 제출 의무가 발생할지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한국 과세 당국이 이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의사항

이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세 포럼은 유럽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과 각 관련 국가 간 GIR-MCAA가 발효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그 시점까지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GIR-MCAA가 발효될 때까지 현행 과태료 면제 조치를 연장할 것을 추가로 권고드립니다.

관련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관련부처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2026 이슈 분류

정책 건의를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전달하기 위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는 규제 성격과 정책 환경에 따라 이슈를 5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입 및 통관
  규제적용
  국제표준 및 적합성
  기타 규제 장벽
  공정경쟁

조치현황:  신규  개정  재건의

위원회 / 포럼	안건 제목	조치현황	카테고리
항공 및 방위	철충교역 지침 개선안의 실효적 이행 및 첨단기술 기반 철충교역 과제 평가체계 강화		
	한국 방산 공급망 및 기술협력 기회에 대한 유럽 기업의 참여 확대		
주류	주류 소매면허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배송 허용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편익 극대화		
	산업 성장 및 소비자 편익 도모를 위한 단일 종량제 체계 도입의 필요성		
	위스키 제품 RFID 태그 부착 의무 완화 검토		
자동차	한-미 관세협약에 따른 자동차 인증 개정안 관련 한-EU FTA 최혜국 대우 검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 관련 유럽계 자동차 수입·제작사와의 소통 개선 요청		

위원회 / 포럼	안건 제목	조치현황	카테고리
환경	한-EU FTA 신기술 분야 글로벌 규제 조화/상호인정 요청		
	온실가스감축 승용/상용 자동차 부문 목표 명확화 요청		
	연비제도 신고제 취지 명확화 및 시설확인 관련 중복 행정절차 해소 요청		
	전기차 보조금 평가 절차 개선, 인프라 확대 및 규정 명확화 요청		
	전기차 출시 일정 지연 개선을 위한 절차 및 운영 개선 요청		
	결함시정 및 무상수리 검토 절차 및 전기차 환경인증 신속화 요청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운영 기준 개선 필요		
	자동차 장착용 유럽 소화기 수입 허용		
	중·대형 전기 상용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자동차 너비 기준에 대한 유연성 부여		
화학	고객이 설치한 부품 및 장치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 방안 검토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개정 논의 관련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 시행 관련		
	화평법과 상이한 산안법의 화학물질 목록으로 인한 업계 부담 완화 개선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면제사항 중복 규제 해소		
	국내 제조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시 화학물질 확인 서류 허용		
	영업비밀 물질의 비공개 승인 개선		

위원회 / 포럼	안전 제목	조치현황	카테고리
	살생물제품 중 향료 성분의 유·위해성 자료 제출 범위 완화 요청	↗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심사 시 해외 승인·평가자료 인정 및 신속검토 제도 도입	✳	📌
화장품	화장품 수입통관예정보고(EDI) 절차 개선에 대한 검토	✳	🛡️
	기능성화장품 자외선차단지수(SPF) 표시 개선	✳	🌐
	화장품 해외 제조원 주소지 표시 기재 개선	↗	🌐
디지털	무선국 검사용 측정 단자 설치 요건 개선	✳	📌
에너지 및 환경	육상풍력 계측기 유효 지역의 유효기간 지정	↗	⚙️
	해상풍력 계획입지 입찰 전 사전 공개 데이터 및 부지 선정 신뢰성 제고	✳	🌐
	해상풍력 계획입지 입찰 평가 고도화 및 발전공기업 협력 모델 구체화	✳	⚙️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 기준 개정	↗	📌
	RPS 일몰 후 REC 입찰 과도기 조치 마련	✳	📌
	거시경제 악화에 따른 해상풍력 투자위험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	🚫
	해상풍력 실사업자 보호를 위한 계통 접속 용량 재배분 기준 명확화	✳	⚙️
	해상풍력 실사업자 보호를 위한 계통 접속 용량 재배분 기준 명확화	✳	📌
	해상풍력 실사업자 보호를 위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과 고정가격계약 간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사업 불확실성 완화	✳	📌
	시운전 발전량 REC 매출 인정 및 판로 확보	✳	📌

위원회 / 포럼	안전 제목	조치현황	카테고리
가족친화미래	청년 생식건강 증진 및 예방 중심 정책 전환	✳	📌
	성인 국가 예방접종 확대를 통한 예방 중심 보건의료체계 전환	✳	📌
	가족친화 정책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인센티브 체계 강화	✳	📌
패션 및 유통	생활용품 정보표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QR코드 활용 항목 확대 및 제도개선	↻	📌
	신발류 제품의 중요 정보 표기 방식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요청	↻	📌
	수입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소매용 포장 원산지 표시 개선	↻	🛡️
	가족제품 표시기준의 유연성 제고 및 개선	↻	🌐
	수입 신발제품 통관 절차 효율화 및 위험도 기반 검사체계 개선	✳	🛡️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확인 시험결과 상호인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	🌐
식품	위생증명서 전자문서화 건의	✳	🌐
	포장재질·구조 평가제도 영문 제공 요청	✳	🚫
	포장 공간비율 가이드라인 영문 제공 요청	✳	🚫
헬스케어	의약품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 개선	↗	📌
	신속한 혁신 신약의 급여 등재 및 확대를 통한 환자 접근성 개선	↗	📌
	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한-EU GMP 및 자국 내 출하시험의 상호인정 제안 및 필수약품의 약가 사후관리 제도	✳	🌐

위원회 / 포럼	안전 제목	조치현황	카테고리
	임상·비임상 자료 인정 범위 개선	※	🌐
	특수의료장비의 성능·연식 기반 수가 차등화 확대	※	🏥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 가치평가 인정 및 확대	※	🏥
인사 및 준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 및 고용 기준의 구체화	↗	👉
보험	독립적·중립적 의료자문기구 설립 및 운영	※	👉
	조직형·의료기관 연계 사기 적발을 위한 실질적 데이터 접근권 확대	※	👉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한 보험 지급여력 규제 조정	※	🌐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강화	🔄	🛡️
	국제 소량 화물 수입통관 효율성 제고	🔄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위조품 유통 방지 제도 마련	🔄	👉
	위조품 유통 근절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위조품 유통 대응 강화를 위한 경찰 내 지역 전담 조직 및 수사 체계 개선	🔄	👉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방안	🔄	🏥
	온라인 위조품 사이트 차단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
	유사 디자인 제품(Dupe)의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기준 정비 필요성	🔄	🏥
	세관 지식재산권 교육 운영의 예측 가능성 및 적시성 강화	※	👉

위원회 / 포럼	안전 제목	조치현황	카테고리
주방 및 소형가전	위생용품 표시사항 위치 개선	※	🌐
	구강관리용품 제조기준 개선	※	🌐
물류 및 운송	LNG 인수기지 해운대리점 선정 절차의 투명성 및 개방성 제고	※	🏥
해양산업	부유식해상풍력 -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이후의 기술 기준/규칙, 인증 기관 및 관련 규정의 명시	※	🌐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BBCHP) 요건 완화, 안전 인증기관 (RO) 제한 해소 및 국가재정지원 제도의 공정경쟁 촉진	↗	🌐
조세	수입요건 정의 관련 규정 명확화	※	🛡️
	거래순이익률 방법 적용 시 수익률지표 관련 규정 개선	※	👉
	이전가격 보고서 적시 보관·비치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특례	🔄	👉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요건	🔄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출 관련 세부 지침 요청	※	👉

3GPP	제3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프로젝트
AAS	능동 안테나 시스템
ABS	미국 선급
ACPE	페달 오조작 가속 제어 시스템
ADAS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REC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BBCHP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BEPS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BPR	살생물제품 규정
BV	프랑스 선급
CAC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BI	영업비밀 정보
CDN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CLP	EU 화학물질 분류·표시·포장 규정
CMC	화학·제조·품질관리
CMS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
CoA	시험성적서
COD	상업운전일
CPNP	EU 화장품 제품 신고 포털
CSMS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CT	컴퓨터단층촬영
DCAS	운전자 제어 지원 시스템
DNV	노르웨이 선급협회
DOT	타이어 제조 식별 코드(제조일자 표시)
EBL	발전사업허가
ECHA	유럽 화학물질청
EDI	전자문서교환
EFSA	유럽식품안전청
EMC	전자파 적합성
EPA	미국 환경보호청
EPC	설계·조달·시공
ESPR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EU BPR	유럽 살생물제품 규정
FC	금융 종결

FDA	미국 식품의약국
FMCG	일용소비재
FMVSS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FOW	부유식 해상풍력
GENCO	발전공기업
GHS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GIR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GIR-MCAA	GIR의 연례 자동정보교환을 규정한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약정
GloBE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GLP	비임상시험관리기준
GMP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GTR	세계기술규정
HS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E	영국 보건안전청
HTA	보건의료기술평가
IACS	국제선급연합회
ICER	점증적 비용효과비
ICH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FRA	국제향료협회
IMO	국제해사기구
IMPD	임상시험용 의약품 문서
IND	임상시험계획승인
ITAR-free systems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 비적용 시스템
IVD	체외진단검사
K-ICS	한국 신지급여력제도
KPTA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KR	한국 선급
LCOE	균등화발전비용
LI	장기보험
LNG	액화천연가스
LOC	국외제조자 확인서
MIMO	다중 입력 다중 출력
MNE Group	다국적기업(MNE) 그룹

줄임말

줄임말	국문
MRA	상호인정협정
MRI	자기공명영상
MRO	유지·보수·정비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nHTA	신의료기술평가
OEM	완성차 제조사
OSHA	산업안전보건법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PBT	법인세 차감 전 이익(세전이익)
PCCT	광자 계수 컴퓨터 단층 촬영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PIC/S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PPA	전력구매계약
PSDS	제품안전자료
PV	태양광 발전
QALY	질보정생존연수
QSAE	유럽 공인 안전성 평가자
QSAR	정량적 구조-활성 관계 모델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F	무선주파수
RFI	정보요청서
RFID	전파식별
RIFM	향료원료연구소
RMP	위해성 관리계획
RO	공인기관
RPS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RSA	위험분담제
RSV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WE	실사용증거
SDS	안전보건자료
SIU	보험사기 특별조사팀
SoC	우려물질
SUM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체계

줄임말

줄임말	국문
TIPA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
TNMM	거래순이익률방법
TSA	송전서비스 계약
TSO	송전계통운영자
TRACES	EU 무역통제 및 전문가 시스템
UNECE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VOC	고객의 소리(고객 의견·민원)
ZEV	무공해차

APQA 농림축산검역본부

DAPA 방위사업청

FSC 금융위원회
FSS 금융감독원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KATRI 자동차안전연구원
KATS 국가기술표준원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S 관세청
KCSC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KDCA 질병관리청
KEA 한국에너지공단
K-eco 한국환경공단
KEPCO 한국전력공사
KFTC 공정거래위원회
KNPA 경찰청
KOIP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PX 전력거래소MCEE 기후에너지환경부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MOEL 고용노동부
MOF 해양수산부
MOFE 재정경제부
MOGEF 성평등가족부
MOHW 보건복지부
MOIP 지식재산처
MOJ 법무부
MOLIT 국토교통부
MOTIR 산업통상부
MSIT 과학기술정보통신부NFA 소방청
NHIS 국민건강보험공단
NICS 화학물질안전원
NIER 국립환경과학원NIFDS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TS 국세청부산광역시 중구청
대구광역시 중구청
국회
양형위원회

기관별 안전 리스트

관련 부처/단체	안전 제목	페이지 번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위생증명서 전자문서화 건의	82
부산광역시 중구청	위조품 유통 대응 강화를 위한 경찰 내 지역 전담 조직 및 수사 체계 개선	105
대구광역시 중구청	위조품 유통 대응 강화를 위한 경찰 내 지역 전담 조직 및 수사 체계 개선	105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지침 개선안의 실효적 이행 및 첨단기술 기반 절충교역 과제 평가체계 강화	24
	한국 방산 공급망 및 기술협력 기회에 대한 유럽 기업의 참여 확대	26
금융위원회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한 보험 지급여력 규제 조정	98
금융감독원	독립적 · 중립적 의료자문기구 설립 및 운영	96
	조직형·의료기관 연계 사기 적발을 위한 실질적 데이터 접근권 확대	97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한 보험 지급여력 규제 조정	9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 개선	85
	신속한 혁신 신약의 급여 등재 및 확대를 통한 환자 접근성 개선	87
	특수의료장비의 성능·연식 기반 수가 차등화 확대	92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 가치평가 인정 및 확대	92

관련 부처/단체	안전 제목	페이지 번호
국가기술표준원	조직형·의료기관 연계 사기 적발을 위한 실질적 데이터 접근권 확대	97
	생활용품 정보표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QR코드 활용 항목 확대 및 제도개선	75
	신발류 제품의 중요 정보 표기 방식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요청	76
	가족제품 표시기준의 유연성 제고 및 개선	78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확인 시험결과 상호인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80
	고객이 설치한 부품 및 장치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 방안 검토	4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무선국 검사용 측정 단지 설치 요건 개선	61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온라인 위조품 사이트 차단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108
관세청	수입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소매용 포장 원산지 표시 개선	77
	수입 신발제품 통관 절차 효율화 및 위험도 기반 검사체계 개선	79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강화	101
	국제 소량 화물 수입통관 효율성 제고	102
질병관리청	세관 지식재산권 교육 운영의 예측 가능성 및 적시성 강화	110
	성인 국가 예방접종 확대를 통한 예방 중심 보건의료체계 전환	72
한국전력공사	해상풍력 실사업자 보호를 위한 계통 접속 용량 재배분 기준 명확화	68
	해상풍력 실사업자 보호를 위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과 고정가격계약 간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사업 불확실성 완화	69
한국에너지공단	연비제도 신고제 취지 명확화 및 시설확인 관련 중복 행정절차 해소 요청	38
	전기차 출시 일정 지연 개선을 위한 절차 및 운영 개선 요청	40

관련 부처/단체	안건 제목	페이지 번호
한국환경공단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개정 논의 관련	46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 시행 관련	47
공정거래위원회	주류 소매면허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배송 허용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편익 극대화	28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온라인 위조품 사이트 차단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108
전력거래소	해상풍력 실사업자 보호를 위한 계통 접속 용량 재배분 기준 명확화	68
	해상풍력 실사업자 보호를 위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과 고정가격계약 간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사업 불확실성 완화	69
경찰청	위조품 유통 근절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04
기후에너지환경부	한-미 관세협약에 따른 자동차 인증 개정안 관련 한-EU FTA 최혜국 대우 검토	33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 관련 유럽계 자동차 수입·제작사와의 소통 개선 요청	34
	온실가스감축 승용/상용 자동차 부문 목표 명확화 요청	37
	연비제도 신고제 취지 명확화 및 시설확인 관련 중복 행정절차 해소 요청	38
	전기차 보조금 평가 절차 개선, 인프라 확대 및 규정 명확화 요청	39
	전기차 출시 일정 지연 개선을 위한 절차 및 운영 개선 요청	40
	결함시정 및 무상수리 검토 절차 및 전기차 환경인증 신속화 요청	41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운영 기준 개선 필요	42
	중·대형 전기 상용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44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개정 논의 관련	46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 시행 관련	47

관련 부처/단체	안건 제목	페이지 번호
환경부	화평법과 상이한 산안법의 화학물질 목록으로 인한 업계 부담 완화 개선	48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면제사항 중복 규제 해소	50
	살생물제품 중 향료 성분의 유·위해성 자료 제출 범위 완화 요청	54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심사 시 해외 승인·평가자료 인정 및 신속검토 제도 도입	56
	육상풍력 계측기 유효 지역의 유효기간 지정	63
	해상풍력 계획입지 입찰 평가 고도화 및 발전기업 협력 모델 구체화	65
	RPS 일몰 후 REC 입찰 과도기 조치 마련	66
	거시경제 악화에 따른 해상풍력 투자위험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67
	해상풍력 실사업자 보호를 위한 계통 접속 용량 재배분 기준 명확화	68
	해상풍력 전력계통 적기 접속 보장 및 계통 접속 지연에 대한 보상 제도화	68
고용노동부	해상풍력 실사업자 보호를 위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과 고정가격계약 간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사업 불확실성 완화	69
	시운전 발전량 REC 매출 인정 및 판로 확보	70
	포장재질·구조 평가제도 영문 제공 요청	83
	포장 공간비율 가이드라인 영문 제공 요청	84
	부유식해상풍력 -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이후의 기술 기준/규칙, 인증 기관 및 관련 규정의 명시	118
	화평법과 상이한 산안법의 화학물질 목록으로 인한 업계 부담 완화 개선	48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면제사항 중복 규제 해소	50
	국내 제조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시 화학물질 확인 서류 허용	51

관련 부처/단체	안전 제목	페이지 번호
	영업비밀 물질의 비공개 승인 개선	53
	청년 생식건강 증진 및 예방 중심 정책 전환	71
	가족친화 정책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인센티브 체계 강화	73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 및 고용 기준의 구체화	94
재정경제부	산업 성장 및 소비자 편익 도모를 위한 단일 종량제 체계 도입의 필요성	30
	거시경제 악화에 따른 해상풍력 투자위험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67
	수입요건 정의 관련 규정 명확화	122
	거래순이익률 방법 적용 시 수익률지표 관련 규정 개선	123
	이전가격 보고서 적시 보관·비치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특례	124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요건	124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출	125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수입통관예정보고(EDI) 절차 개선에 대한 검토	58
	기능성화장품 자외선차단지수(SPF) 표시 개선	59
	화장품 해외 제조원 주소지 표시 기재 개선	59
	신속한 혁신 신약의 급여 등재 및 확대를 통한 환자 접근성 개선	87
	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한-EU GMP 및 자국 내 출하시험의 상호인정 제안 및 필수약품의 약가 사후관리 제외	90
	임상·비임상 자료 인정 범위 개선	91
	위생용품 표시사항 위치 개선	112
	구강관리용품 제조기준 개선	113

관련 부처/단체	안전 제목	페이지 번호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 정책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인센티브 체계 강화	73
보건복지부	청년 생식건강 증진 및 예방 중심 정책 전환	71
	성인 국가 예방접종 확대를 통한 예방 중심 보건의료체계 전환	72
	의약품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 개선	85
	신속한 혁신 신약의 급여 등재 및 확대를 통한 환자 접근성 개선	87
	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한-EU GMP 및 자국 내 출하시험의 상호인정 제안 및 필수약품의 약가 사후관리 제외	90
	특수의료장비의 성능·연식 기반 수가 차등화 확대	92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 가치평가 인정 및 확대	92
지식재산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위조품 유통 방지 제도 마련	103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방안	107
	온라인 위조품 사이트 차단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108
	유사 디자인(Dupe) 제품 확산에 따른 법적 대응 기준 마련 및 실무 적용 구체화	109
법무부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방안	107
국토교통부	한-EU FTA 신기술 분야 글로벌 규제 조화/상호인정 요청	35
	자동차 너비 기준에 대한 유연성 부여	44
	고객이 설치한 부품 및 장치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 방안 검토	45
	독립적·중립적 의료자문기구 설립 및 운영	96
	조직형·의료기관 연계 사기 적발을 위한 실질적 데이터 접근권 확대	97
해양수산부	해상풍력 계획임지 입찰 전 사전 공개 데이터 및 부지 선정 신뢰성 제고	64

관련 부처/단체	안전 제목	페이지 번호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 기준 개정	66
	LNG 인수기지 해운대리점 선정 절차의 투명성 및 개방성 제고	115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BBCHP) 요건 완화, RO 제한 해소 및 국가재정지원 제도의 공정 경쟁 촉진	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국 검사용 측정 단자 설치 요건 개선	61
산업통상부	한-미 관세협약에 따른 자동차 인증 개정안 관련 한-EU FTA 최혜국 대우 검토	33
	한-EU FTA 신기술 분야 글로벌 규제 조화/상호인정 요청	35
	전기차 출시 일정 지연 개선을 위한 절차 및 운영 개선 요청	40
	화장품 수입통관예정보고(EDI) 절차 개선에 대한 검토	58
	수입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소매용 포장 원산지 표시 개선	77
	LNG 인수기지 해운대리점 선정 절차의 투명성 및 개방성 제고	115
국회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방안	107
소방청	자동차 장착용 유럽 소화기 수입 허용	43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약품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 개선	85
	신속한 혁신 신약의 급여 등재 및 확대를 통한 환자 접근성 개선	87
	특수의료장비의 성능·연식 기반 수가 차등화 확대	92
화학물질안전원	살생물제품 중 향료 성분의 유·위해성 자료 제출 범위 완화 요청	54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심사 시 해외 승인·평가자료 인정 및 신속검토 제도 도입	56
국립환경과학원	결함시정 및 무상수리 검토 절차 및 전기차 환경인증 신속화 요청	41

관련 부처/단체	안전 제목	페이지 번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한 혁신 신약의 급여 등재 및 확대를 통한 환자 접근성 개선	87
국세청	주류 소매면허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배송 허용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편익 극대화	28
	위스키 제품 RFID 태그 부착 의무 완화 검토	31
양형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100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백서 2026